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25. 9.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25.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강신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호용 서울대학교 공기업정책학과 교수

연구보조자: 김달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원

이동희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박사과정)

202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이 영

저자들은 본 연구 중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모든 관련 부처 및 기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활용하기 용이하게 도와주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연구 수행에 큰 도움을 준 김달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원과 이동희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박사과정)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요 약

1. 연구 개요

□ 연구 목적

-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 수행 및 제도개선 방안 정책제언 제시
- 효과성 분석
 - 세액공제가 기금출연에 미치는 효과
 - 협력기금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
- 타당성 분석
 - 정부 개입 근거, 지원방식 적절성, 중복성 여부 등 검토
- 제도개선 방안 정책제언
 -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제도개선 방안 제언

2. 제도 개요 및 현황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0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이 신설됨
 - 현재는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제목이 개정되어 운영됨

- 기업 간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0년 9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함¹⁾

1) 기획재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2010. 9. 29.

- 투자재원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협력사 지원 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2차, 3차 협력사 지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7%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언급됨
- 2010년 12월에 신설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고 세액공제 정도도 커짐
- 최초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과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가 늘어남
 - 최초 공제율은 7%였으나 2016년 12월 개정을 통해 10%로 상향되어 이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일부 개정을 통해 기금출연 외에 상생협력을 위한 다른 유형의 투자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에 다른 공제율을 제공하는 조항을 추가함
- 2016년 12월 개정에서 유형고정자산의 무상 임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로 포함함
 - 2018년 12월 개정을 통해서 위·수탁 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시설을 설치하는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였음
 - 2022년 12월 개정에서는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자산을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범위를 넓힘

□ 제도 현황 및 연혁

- 신고현황: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증가추세

<표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소득세 세액공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득세 세액공제 금액	0	0	0.8	0.5	0.5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별(2021~2025년).

2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표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수, 백만원)

연도	중소기업		일반법인		합계	
	신고법인	금액	신고법인	금액	신고법인	법인
2012	0	0	8	848	8	848
2013	0	0	15	9,291	15	9,291
2014	0	0	30	1,773	30	1,773
2015	0	0	45	3,882	45	3,882
2016	0	0	51	8,359	51	8,359
2017	0	0	54	9,376	54	9,376
2018	0	0	65	14,870	65	14,870
2019	0	0	75	17,876	75	17,876
2020	0	0	92	20,170	92	20,170
2021	2	20	100	21,162	102	21,182
2022	3	2	125	32,859	128	32,861
2023	2	1	132	40,813	134	40,814

자료: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5. 4. 9.

○ 출연금 및 지원금 규모: 증가 추세

<표 3>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및 지원금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연 금액	누적	4,983	6,483	8,054	10,067	12,074	14,646	18,330	22,693	26,563	27,882
	순증	1,424	1,500	1,571	2,013	2,007	2,572	3,684	4,363	3,870	1,319
지원 금액	누적	3,987	5,436	6,951	8,790	10,494	12,788	15,362	18,788	23,149	25,024
	순증	1,442	1,449	1,515	1,839	1,704	2,294	2,574	3,426	4,361	1,875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https://win-win.or.kr/kr/pages/ethics/ethicsIndi.do>, 검색일자: 2025. 4. 9.

○ 제도 연혁: <표 4> 참조

<표 4>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개정 연혁

개정일자 (시행일자)	주요 내용
2010. 12. 27. (201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 공제) 조항 신설 • 일몰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2011. 12. 31. (201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출연하는 대상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을 포함
2014. 1. 1. (201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2016. 3. 29. (2016.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2016. 12. 20. (201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개정 개정 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개정 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변경 •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상생협력의 근거 조항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를 추가하여 협력중소기업의 특정 활동 지원 요건을 삭제 • 용어 변경(대·중소기업협력재단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유형고정자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를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항(제2항) 신설
2018. 12. 24. (201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개정 개정 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개정 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위탁·수탁 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금을 1% 공제(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하는 조항(제3항) 신설
2019. 12. 31. (202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조항(제1항 제3호) 추가
2020. 12. 29. (202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항의 세액공제 방법 준용 법적 근거 수정
2021. 12. 28. (202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을 공제하는 조항(제1항 제4호) 추가
2022. 12. 31. (202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자산을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10%를 세액공제하는 조항(제4항) 신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검색일자: 2025. 4. 7.

3. 타당성 분석

□ 타당성 분석

○ 정부 개입 적절성

-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어려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증가 모습을 보임
- 긍정적 외부성: 상생협력을 통한 긍정적 지식·네트워크 등의 외부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에 정책을 통한 사회후생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음

○ 지원 적절성: 수혜자·지원시기·행정집행(박노욱·김학수, 2013) 측면에서 효율적

- 수혜자&납세자 일치: 사업활동을 통해 명시적인 세금부담을 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기금출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에 수혜자&납세자 일치성 충족
- 효율적 지원시기: 정부 예산심의를 거치는 재정지원 방식에 비해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짐.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인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 기금출연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
- 효율적 행정집행: 재정지원 방식은 사업계획 심사, 집행, 사후 평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해 행정비용과 시간 과다 소요. 반면 세액공제 방식은 기존 세무신고 체계 내에서 간편하게 운영 가능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정책 집행의 신속성 확보에 유리함. 특히 기금출연 기업이 다수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행정 간소화가 더욱 중요함

○ 중복성 여부: 존재함

- 중복지원: 「일반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인정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가 중복지원
- 시사점: 중복지원 효과를 모두 합치면 출연금액의 95%(=①10%+②25%+③60%)만큼 법인세가 감소가 가능함. 법인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액감소 효과가 104.5%(=법인세 95%+지방소득세 9.5%)에 달할 수 있음. 해당 경우 출연금액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함

<표 5> 세액감소 효과 산정

(단위: %)

항목	적용 내용	세액감소율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특법」 제8조의3)	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10%
기부금 손금산입 효과 (「법인세법」 제24조)	출연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	최대 25%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효과 (「조특법」 제100조의32)	출연금액의 300%를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약 60% (300%×20%)
합계		95% (법인세 기준)

자료: 저자 작성

□ 정책제언: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의 단계적 적용 검토 고려 가능

- (시나리오 1)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금산입 중복 적용 제한
 -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10%)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조세지원 과다 방지 및 제도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부를 통한 사회적 기여 유인 감소 및 기업의 자율적 인센티브 설계의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함. 이를 통해 세제혜택 총량을 제한하여 출연의 진정성 회복 및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예측됨
- (시나리오 2)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의 300% 차감 비율 축소
 - 미환류소득 차감 비율을 기존 300%에서 200%로 축소함으로써 조세감소 효과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및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상생활동에 대한 유인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과 세제혜택 매력도 일부 저하가 예측됨
- (시나리오 3) 상생성과에 기반한 세액공제 차등 적용
 - 출연만으로 일률적 세액공제(10%) 부여하는 대신 상생 성과(예: 협력중소기업 매출 증가율, 고용 창출 효과 등)에 따라 세액공제율 5~15% 차등 적용함. 성과 중심 상생협력 촉진 및 정책목표 실현도 제고의 장점이 있으나, 성과 측정·검증 부담 증가 및 행정관리 비용 소폭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예측됨

4.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 1. 세액공제가 기금출연에 미치는 영향

- 분석 자료: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국세청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은 자료 활용
- 분석방법
 - 세액공제율이 변화된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출연기업 수 및 출연금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음
 - 방법론: 차우 검정(Chow test, 구조적 단절 여부 검정), 이원고정효과 모형
 - 추가 분석: 출연기업의 어떤 특성이 기금 출연행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로짓(Logit) 분석을 통하여 기금 출연행태와 기업 특성 간 관계 분석
- 주요 분석 결과
 - 차우 검정 결과
 - 국세청 세액공제액 및 재무자료: 세액공제율 변화 전후로 세액공제액 혹은 세액공제 대상 기업 비율이 구조적으로 변화한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재무정보와 결합한 자료: 세액공제율 변화 전후로 기금출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조적으로 변화하였음
 - 이원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 세액공제율이 확대된 2016년 정책 변화가 출연금을 증가시켰음을 보임
 - 외연적 측면(출연했는지 여부, Extensive margin)과 출연기금 규모(Total margin 혹은 Intensive margin) 모두에 양(+)의 효과가 있음을 보임
 - 로짓회귀분석: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재무성과가 좋은 기업일수록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높음을 보임

□ 효과성 분석 2. 기금출연이 협력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분석 자료: KoDATA,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협조자료
- 분석방법
 - 고정/임의효과 모형 분석: 협력중소기업과 다른 중소기업 간 성과 차이 분석
 - 모형을 확장하여 2016년·2018년 전후 효과 분석

- 주요 분석 결과(기업 연혁은 모두 통제)
 - 매출액: 다른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협력중소기업 매출액이 유의하게 높음.
지원금액과도 양(+)의 관계가 존재함

5.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 전반적 분석 결과

- 효과성 분석: 제도 취지와 일치하는 효과성 분석 결과 관측됨
- 타당성 분석: 정부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고, 재정사업 대신 조세지원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단 현행 제도에서는 과도한 조세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조정을 검토할 필요 존재함

□ 정책제언

- 일몰 연장 시, 서술하였던 시나리오 등을 고려하여 중복 정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 가능함
- 향후 필요한 추가 분석: 시장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균형을 고려한 경제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장구조 및 사회후생 효과를 같이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목 차

I. 서론	15
1. 심층평가 개요	17
2. 선행연구	17
3. 본 연구 구성	18
II. 제도 현황	19
1. 제도 개요	21
가. 배경 및 목적	21
나. 제도 연혁	21
다. 주요 내용	24
라. 세액공제 신고 현황	31
2. 상생협력기금	33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33
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6
III. 타당성 분석	39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42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	43
나. OECD 주요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유사 제도 사례	48
다. 상생협력의 필요성	61
2. 지원의 적절성	64
가. 정책수단 측면	64
나. 정책설계 측면	69
다. 정책대상 측면	71
라. 정책운영 측면	72

3. 지원의 중복성	73
가. 타 제도와의 중복성	73
IV. 효과성 분석	81
1. 세액공제율 변화와 기금출연의 관계 분석	86
가. 개요	86
나. 분석 모형 일반론	87
다. 분석 자료 소개	92
라. 세액공제율 변화와 기금출연의 관계 분석 결과	95
마. 기업 특성과 기금출연의 관계 분석 결과	113
바. 세액공제율 변화가 기금출연에 미치는 효과성 평가 종합 해석	119
2. 기금출연이 협력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120
가. 분석 개요	120
나. 분석 자료	121
다. 분석 모형	127
라. 분석 결과	128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41
1. 종합평가	143
2. 개선방안	144
참고문헌	146
부록	149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령	151
2. 효과성 분석 부표 및 부도	156

표 목 차

<표 II-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개정 연혁	23
<표 II-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의 세액공제 대상 기금	25
<표 II-3>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의 요약	30
<표 II-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32
<표 II-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소득세 세액공제 현황	32
<표 II-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및 지원금 규모	35
<표 II-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활용 사업	35
<표 II-8>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협약 및 출연 현황	38
<표 III-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	43
<표 III-2> 대기업,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이	45
<표 III-3> 대기업, 중소기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차이	46
<표 III-4> 대기업,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차이	46
<표 III-5> ZIM 지원 대상 및 요건	53
<표 III-6> ZIM 지원 방식 및 범위	54
<표 III-7> 수혜자-납세자 일치 원칙을 반영한 OECD 주요국 사례	67
<표 III-8> 논리모형의 구조와 적합성	70
<표 III-9> 정책설계상 보완 필요사항	71
<표 III-10> 기부금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4조)	73
<표 III-1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73
<표 III-12> 세액감소 효과 산정	74
<표 III-13>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78
<표 III-14> 연구개발기관별 기관의 현금부담 비율	79
<표 IV-1> 출연기업 재무정보 - 국세청 자료	93
<표 IV-2> 출연기업 재무정보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94

<표 IV-3> 통제변수가 없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공제받음)	96
<표 IV-4> ‘공제받음’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없는 경우)	96
<표 IV-5> 통제변수가 있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공제받음)	98
<표 IV-6> ‘공제받음’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있는 경우)	98
<표 IV-7> 통제변수가 없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log(공제세액))	99
<표 IV-8> ‘log(공제세액)’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없는 경우)	100
<표 IV-9> 통제변수가 있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log(공제세액))	101
<표 IV-10> ‘log(공제세액)’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있는 경우)	102
<표 IV-11> ‘log(공제세액)’을 종속변수로 한 이원 고정효과 분석 결과 (통제변수가 없는 경우)	103
<표 IV-12> ‘log(공제세액)’을 종속변수로 한 이원 고정효과 분석 결과 (통제변수가 있는 경우)	103
<표 IV-13> 통제변수가 없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출연함)	104
<표 IV-14> ‘출연함’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없는 경우)	105
<표 IV-15> 통제변수가 있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출연함)	107
<표 IV-16> ‘출연함’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있는 경우)	108
<표 IV-17> 통제변수가 없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log(출연금))	108
<표 IV-18> ‘log(출연금)’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없는 경우)	109
<표 IV-19> 통제변수가 있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log(출연금))	111
<표 IV-20> ‘log(출연금)’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있는 경우)	112
<표 IV-21> ‘log(출연금)’을 종속변수로 한 이원 고정효과 분석 결과 (통제변수가 없는 경우)	112
<표 IV-22> ‘log(출연금)’을 종속변수로 한 이원 고정효과 분석 결과 (통제변수가 있는 경우)	113
<표 IV-23> 로짓 분석 결과(국세청 데이터)	115
<표 IV-24> 로짓 분석 결과(상생협력기금 데이터와 한국평가데이터를 결합한 자료)	118
<표 IV-25> 지원목적 코드	122
<표 IV-26> 지원목적별 출연금 사용내역	123
<표 IV-27> 기초통계량	125
<표 IV-28> 기초통계량: 중소기업을 총 근로자 수 300인 미만으로 정의한 경우	125

<표 IV-29> 기초통계량: 중소기업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으로 정의한 경우	126
<표 IV-30> 기준모형 추정결과-자연로그 매출액	129
<표 IV-31> 기준모형 추정결과-자연로그 연구개발비	129
<표 IV-32> 기준모형 추정결과-영업이익	130
<표 IV-33> 임의효과 모형 추정결과-자연로그 매출액	131
<표 IV-34> 임의효과 모형 추정결과-자연로그 연구개발비	131
<표 IV-35> 임의효과 모형 추정결과-영업이익	132
<표 IV-36> 2016년/2018년 이후 협력중소기업 성과 변화 검정-자연로그 매출액	133
<표 IV-37> 2016년/2018년 이후 협력중소기업 성과 변화 검정-자연로그 연구개발비 .	134
<표 IV-38> 2016년/2018년 이후 협력중소기업 성과 변화 검정-영업이익	135
<표 IV-39> 총 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자연로그 매출액	136
<표 IV-40> 총 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자연로그 연구개발비	136
<표 IV-41> 총 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영업이익	137
<표 IV-42> 상시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자연로그 매출액	137
<표 IV-43> 상시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자연로그 연구개발비	138
<표 IV-44> 상시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자연로그 영업이익	138

그림 목 차

[그림 III-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	44
[그림 III-2] 대기업,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차이(2020=100)	47
[그림 III-3] 외부경제를 고려한 적정 상생협력 활동 규모	63
[그림 III-4]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방식	76
[그림 III-5]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절차	77
[그림 IV-1] 연구 개요	83
[그림 IV-2]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기업의 법인세 공제액의 연도 평균 추이	93

I. 서론



I. 서론

1. 심층평가 개요

- 본 연구에서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3) 효과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함
 - 효과성 분석
 - 세액공제가 기금출연에 미치는 효과
 - 협력기금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
 - 타당성 분석
 - 정부 개입 근거, 지원방식 적절성, 중복성 여부 등 검토
 - 제도개선 방안 정책제언
 -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제도개선 방안 제언

2. 선행연구

- 대표적 연구: 황희주·김태형·정규언·윤재형(2019) 「조특법」 제8조의3 임의심층평가
 - (연구 목적) 본 연구와 유사하게 「조특법」 제8조의3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
 - (타당성 분석) 정부 개입이 필요하며 조세지원을 통한 유인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또한 행정비용 절감 등 측면에서 조세지원이 재정지원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음
 - (중복지원) 중복성이 존재하며 중복 법인세 세액공제율 적용이 최대 95%일 수 있음을 보임
 - (효과성 분석) 패널 데이터 및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다음을 분석함
 - 기금출연 유인: 세액공제율 7 → 10% 인상이 기금출연에 양(+)의 영향을 미침을 보임

- 협력기금 파급효과
 - 설문조사: 지원규모가 클수록 협력 기업의 서비스·제품 품질, 납품기일 등 협력수준이 개선된다는 추정 결과 도출
 - 성향 매칭 점수(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 및 패널 분석: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임금 등 재무성과가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임. 단 매출액 증가율, 자산증가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임
- (정책제언) 타당성과 효과성이 인정됨을 보임. 제도 개선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제도 오용 방지: 추가적 협력활동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조세혜택 조정: 중복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세지출 합리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함
- (본 연구와의 비교)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모두 세부적인 부분에서 분석 방법, 활용 자료 등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결과는 유사함
 - 시나리오별 제언을 통하여 제도 개선에 도움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3. 본 연구 구성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제Ⅱ장에서는 제도 현황을 소개하였음
 - 제Ⅲ장에서는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
 - 기존 타당성 분석에서 수행하는 정부 개입 타당성, 조세지원 적절성, 중복지원 제도 검토
 - OECD 주요국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조특법」 제8조의3 제도가 갖는 특징을 논의하였음
 - 유사 재정사업 사례 조사
 - 제Ⅳ장에서는 효과성 분석을 수행함
 - 제1절: 세액공제제도가 기금출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2절: 출연기금이 협력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Ⅱ. 제도 현황



II.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0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이 신설됨
 - 현재는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제목이 개정되어 운영됨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및 농어촌·농어업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한 기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양극화 해소,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본 제도의 목적임
 - 해당 세제혜택은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내국법인으로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무상 임대, 시설 투자, 자산 기증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됨

나. 제도 연혁

- 기업간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0년 9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발표함²⁾
 - 투자재원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협력사 지원 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2) 기획재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2010. 9. 29.

-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2차, 3차 협력사 지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7%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언급됨
- 2010년 12월에 신설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고 세액공제 정도도 커짐
- 최초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과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가 늘어남
 - 최초 공제율은 7%였으나 2016년 12월 개정을 통해 10%로 상향되어 이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일부 개정을 통해 기금출연 외에 상생협력을 위한 다른 유형의 투자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에 다른 공제율을 제공하는 조항을 추가함
- 2016년 12월 개정에서 유형고정자산의 무상 임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로 포함함
 - 2018년 12월 개정을 통해서 위·수탁 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시설을 설치하는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였음
 - 2022년 12월 개정에서는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자산을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범위를 넓힘
- 본 제도의 최초 도입 시 일몰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3년 단위로 이를 연장하여 2025년 4월 기준으로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규정됨

<표 II -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개정 연혁

개정일자 (시행일자)	주요 내용
2010. 12. 27. (201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 공제) 조항 신설 • 일몰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2011. 12. 31. (201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출연하는 대상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을 포함
2014. 1. 1. (201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2016. 3. 29. (2016.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2016. 12. 20. (201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개정 개정 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개정 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변경 •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상생협력의 근거 조항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를 추가하여 협력중소기업의 특정 활동 지원 요건을 삭제 • 용어 변경(대·중소기업협력재단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유형고정자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를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항(제2항) 신설
2018. 12. 24. (201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개정 개정 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개정 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위탁·수탁 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금을 1% 공제(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하는 조항(제3항) 신설
2019. 12. 31. (202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조항(제1항 제3호) 추가
2020. 12. 29. (202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항의 세액공제 방법 준용 법적 근거 수정
2021. 12. 28. (202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을 공제하는 조항(제1항 제4호) 추가
2022. 12. 31. (202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자산을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10%를 세액공제하는 조항(제4항) 신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검색일자: 2025. 4. 7.

다. 주요 내용

- 상생협력과 관련된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3(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
- 해당 제도의 세액공제는 투자 방식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출연, 유형고정자산 무상 임대, 수탁기업 시설 투자, 연구시험용 자산 무상 기증으로 나뉨
 - 각각의 투자방식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 또는 공제세율이 다름
 - 기금출연을 통한 세액공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출연하여야 함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는 재단이 직접 설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외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포함됨

1) 세액공제 관련

가) 상생협력기금 출연

-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네 가지 출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출연(동법 제1항 제1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동법 제1항 제2호)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동법 제1항 제3호)
 -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동법 제1항 제4호)

〈표 II -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의 세액공제 대상 기금

기금	기금 설립 목적	적용 조항
신용보증기금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이 원활하도록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3호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생활원조, 복리후생 등을 지원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 사업을 위한 개발, 시험연구, 판로개척, 조달 시장 진출, 정보화 사업 등의 중앙회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주: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을 다루고 있으나 기금에 대한 구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 상생협력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의미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에서는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이 기술, 인력, 생산, 유통,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과 민간기업등이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농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지원 활동을 뜻함

- 단 해당 출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을 따르며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3. 2. 28., 2025. 2. 28.>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동법 제1항 제1호)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 협력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기업을 뜻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② 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2016. 6. 21., 2017. 2. 7.>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4. 그 밖에 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 (동법 제1항 제2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 이 재단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포함됨

- (동법 제1항 제3호)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상생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를 따르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를 따름
 -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함
 - 2019년 12월 개정을 통해 해당 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0년 1월부터 가능해짐

- (동법 제1항 제4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8항에는 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과 사용 용도가 규정되어 있음
 - 2021년 12월 개정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에서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업무) ⑧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 나. 기업의 출연금
 -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 마. 정보화 사업
 -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나) 유형고정자산 무상 임대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 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용자산으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중 하나에 해당함
 - 단 운휴 중인 자산은 위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유형고정자산의 무상 임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2016년 12월 일부개정으로 신설되어 2017년 1월부터 적용이 가능해짐
- 내국법인이 지원하는 협력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이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상생협력기금 출연에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을 따름

다) 수탁기업 시설 투자

-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기업의 유형마다 정해진 공제세율을 투자 금액에 반영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함
 -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하며 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수탁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할 때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공제대상에 해당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을 말함
 - 단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대상에서 동법 제2항의 무상 임대인 경우는 제외함
 - 수탁기업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규정은 2019년 12월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신설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

- 세액공제 방법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따름

라) 연구시험용 자산 무상 기증

-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의 시가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반도체 관련 연구·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의미함
 - 해당 규정은 가장 최근에 신설된 내용으로 2022년 12월에 추가되어 2023년 1월에 시행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4항을 따르며 다음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⑭ 법 제8조의3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 2. 28.>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다음 각 목의 학교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학과가 설치된 일반고등학교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전략 산업종합교육센터

<표 II -3>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요약

유형	내용	공제세목 (세액공제율)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	법인세 (1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유형고정자산 무상 임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	법인세 (3%)
수탁기업 시설 투자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투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본: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연구시험용 자산 무상 기증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자산을 대학 및 그밖에 교육기관에게 무상으로 기증	법인세 (10%)

자료: 저자 작성

2) 회계처리 및 신고, 회수, 신청 관련

- 동법 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해야 함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동법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 제2항에 따른 무상 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무상 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 동법의 각 유형의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함
 -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의 내용을 따름

라. 세액공제 신고 현황

- 대·중소기업상 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2023년 기준으로 134개의 법인이 총 408억원을 세액공제를 신고함
 - 매년 상생협력기금 출연의 세액공제 신고를 한 법인은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일반법인임
 - 신고금액은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2023년은 직전 연도에 비해 24%(79.5억원) 증가하였음

〈표 II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수, 백만원)

연도	중소기업		일반법인		합계	
	신고법인	금액	신고법인	금액	신고법인	법인
2012	0	0	8	848	8	848
2013	0	0	15	9,291	15	9,291
2014	0	0	30	1,773	30	1,773
2015	0	0	45	3,882	45	3,882
2016	0	0	51	8,359	51	8,359
2017	0	0	54	9,376	54	9,376
2018	0	0	65	14,870	65	14,870
2019	0	0	75	17,876	75	17,876
2020	0	0	92	20,170	92	20,170
2021	2	20	100	21,162	102	21,182
2022	3	2	125	32,859	128	32,861
2023	2	1	132	40,813	134	40,814

자료: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5. 4. 9.

〈표 II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소득세 세액공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득세 세액공제 금액	0	0	0.8	0.5	0.5

주: 1.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는 2018년 12월 24일 「조특법」 개정으로 제8조의3제3항으로 신설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9년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음
 2.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세액공제 금액의 단위가 억원으로 나타나 세부적인 금액을 확인하지 못함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별(2021~2025년)

2. 상생협력기금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를 근거로 정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설립함
 - 동법 제2항 제6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동법 제2항 제7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을 근거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임³⁾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는 2017년에 신설되었으며, 기금 설치 목적, 관리·운용, 출연금 사용 용도 등을 다룸
 - 출연주체는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내국법인임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함
 - 출연 시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음
 -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제8조의3)
 - 출연금 100%까지 기부금 인정하여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유휴자금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부과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의 3배를 비용으로 공제(「조특법」 100조의32)

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WINFIS), https://winfis.win-win.or.kr/main/usr_1900/usr_1900, 검색 일자: 2025. 4.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 11. 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4(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 제5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6. 25., 2024. 10. 22.>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8.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8. 5. 2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연도별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는 2024년에 큰 폭으로 하락함

- 2024년 12월 기준 기금의 누적 출연금은 2조 7,882억원, 누적 지원금액은 2조 5,024억원임

- 2024년의 출연금의 증가 규모는 2023년에 비해 2,551억원 감소한 1,319억원, 지원금 규모는 2,486억원 감소한 1,875억원임

<표 II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및 지원금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연금액	누적	4,983	6,483	8,054	10,067	12,074	14,646	18,330	22,693	26,563	27,882
	순증	1,424	1,500	1,571	2,013	2,007	2,572	3,684	4,363	3,870	1,319
지원금액	누적	3,987	5,436	6,951	8,790	10,494	12,788	15,362	18,788	23,149	25,024
	순증	1,442	1,449	1,515	1,839	1,704	2,294	2,574	3,426	4,361	1,875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https://win-win.or.kr/kr/pages/ethics/ethicsIndi.do>, 검색일자: 2025. 4. 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다양한 사용 용도에 맞추어 여러 사업에 활용되고 있음4)

<표 II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활용 사업

사업	사업내용
민간자율기획사업 (구 투자재원)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 자율(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상생협력 활동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구매조건부(공동R&D)	중소벤처기업부와 출연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이 공동출연협약을 통해 R&D 기금을 조성하고, 출연기업이 필요한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산업혁신운동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2, 3차 협력사의 제조 프로세스, 경영 혁신활동, 생산기술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스마트공장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이하 주관기업)과 정부가 자금을 조성하여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혁신활동을 종합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https://win-win.or.kr/kr/contents/busi_win_1/IVew.do, 검색일자: 2025. 4. 8.

<표 II -7>의 계속

사업	사업내용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역량 강화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성과공유제	수·위탁기업 간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협력사 ESG 평가지원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수출기업화 촉진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https://win-win.or.kr/kr/contents/busi_win_1/IVew.do, 검색일자: 2025. 4. 8.; 황희주 외, 『2019년 조세특례 임의심층경가(I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한국개발연구원, 2019.

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를 근거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적, 설치, 관리, 기금 사용 용도 등의 규정되어 있음⁵⁾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됨
 - 기금 도입과 관련된 법적 기반은 2017년 1월 17일에 마련되었음
 - 기금 설치, 조성, 기금 사용 용도 등을 규정(「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제18조의2)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정(「상생협력법」 제20조)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 출연시 세제혜택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과 동일함
 -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제8조의3)
 - 출연금 100%까지 기부금 인정하여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4조)

5)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winwinfund.or.kr/home/sub/sub01_01_01.do?mid=1212, 검색일자: 2025. 4. 8.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유휴자금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부과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의 3배를 비용으로 공제(『조특법』 100조의3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8. 27.>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 1의2.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수의학·수산화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 1. 17.]

[법률 제14528호(2017. 1. 17.) 제1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월 16일까지 유효함]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사업종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며 출연기업은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자율추진사업) 출연기업이 출연한 지정기금을 재원으로 용도 및 사업을 지정하여 진행하는 사업
 - (본부기획사업) 운영본부가 농어촌·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출연기업이 이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사업
 - (공모사업) 농어입인 단체, 사회복지기관, 비정부기구(NGO), 지자체 등이 농어촌·농어입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출연기업이 이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사업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연도별 조성금의 규모는 2022년 이후 3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지원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말 기준 한 해 347억원의 조성금액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누적 조성금액은 2,604억원을 기록함
 - 같은 기간 2024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금은 441억원으로 최근 5년 내에 가장 큰 규모이며 누적 지원금액은 2,192억원으로 나타남

〈표 II -8〉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협약 및 출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성 금액	누적	780	1143	1598	1953	2257	2604
	순증	-	363	455	355	304	347
지원 금액	누적	499	774	1063	1376	1751	2192
	순증	-	275	289	313	375	441

주: 조성금액의 합계는 다년 조성금액(48.3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https://win-win.or.kr/kr/pages/ethics/ethicsIndi.do>, 검색일자: 2025. 4. 8.

Ⅲ. 타당성 분석



Ⅲ. 타당성 분석

- 본 장에서는 2024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효과성과 타당성을 분석하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도입됨
 -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후술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을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상생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단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 단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무상임대 제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자산의 시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타당성 분석은 정부 개입의 적절성 평가, 정책대상 설정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평가, 유사 제도 간의 중복성 평가로 진행하고자 함
-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할 당위성 근거 및 수혜대상과 지원방식 적절성에 대한 검토하고 제도를 연장할 때 검토 가능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다른 세액공제 공제율과 비교하여 현재 공제율 10%가 효율적인 수준인지 등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분석 수행
 - 본 연구에서 타당성 분석은 정부 개입의 적절성 평가, 정책대상자의 설정과 지원방식의 적절성, 유사 제도 간의 중복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도의 목적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

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상생협력법」 제1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법의 주요 목적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소기업 간 경쟁력 동반 제고, 양극화 해소 및 경제력 집중 완화,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등의 궁극적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생협력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천적 수단으로 도입된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로, 해당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대기업의 자발적 기금출연을 유도하여 중소기업 지원 재원을 확보
 - 민간 차원의 상생협력 촉진 및 실질적 참여 확대
 - 세제 혜택을 통한 참여 인센티브 제공
 - 기금 운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판로지원 등 실질적 경쟁력 강화
-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가경제 전반의 포용적 성장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30년간(1996~2024년)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 즉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표 III-1>과 같음

<표 III-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

(단위: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임금비율	69.7	66.6	64.5	65	65.9	62.2	60.9	57.2	57.6	59.9	58.4	55.4	57.6	54.8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임금비율	52.9	53.2	52.9	52.5	54.1	54.5	55.8	52.8	55.1	57.5	54.5	53.6	53.6	54.7

주: 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 = (중소기업 임금 ÷ 대기업 임금) × 100

2.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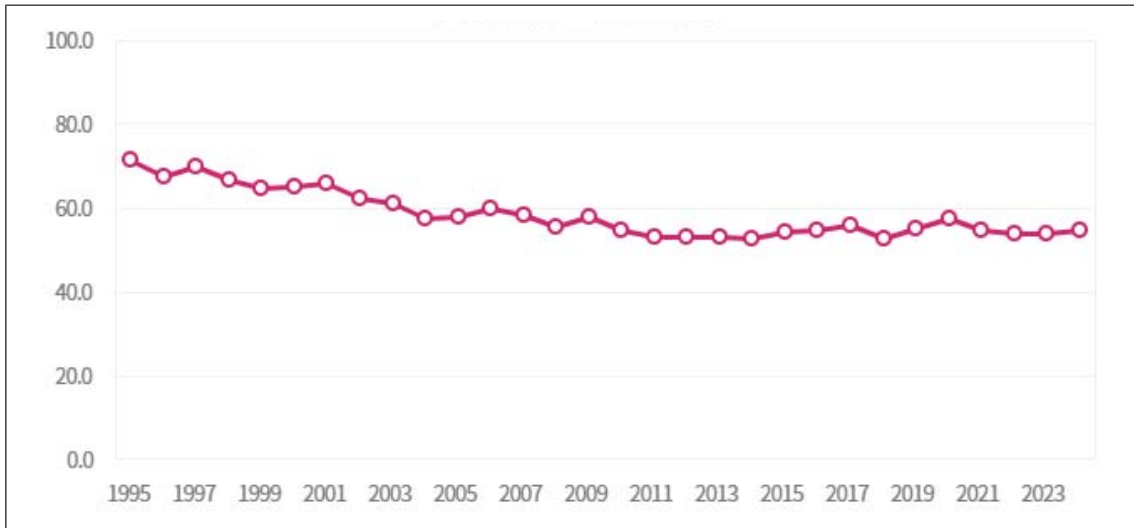
3. 대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은 1993~1998년까지 10~299인 이하 사업장, 1999년 이후는 5~299인 이하 사업장임

4. 2008년 이후 추정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으로 이전과 단순 비교할 수 없음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각 연도별

[그림 III-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

(단위: %)



주: 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 = (중소기업 임금 ÷ 대기업 임금) × 100

2.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함

3. 대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은 1993~1998년까지 10~299인 이하 사업장, 1999년 이후는 5~299인 이하 사업장임

4. 2008년 이후 추정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으로 이전과 단순 비교할 수 없음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각 연도별

-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대기업⁶⁾과 중소기업⁷⁾ 간 근로자 임금격차는 기업의 경쟁력과 성과, 기업의 인적구성과 기술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데, 대기업 근로자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996년 69.7%에서 2024년 54.7%로 낮아짐. 임금격차가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줌

□ 수익성 측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이가 존재함. 수익성 지표 중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를 살펴보면 <표 III-2>와 같음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함.

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에 해당되고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곳 중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세부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을 지칭함.

- <표 III-2>를 보면 최근 16년간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평균 3.4%로 대기업의 5.6%에 비하여 2.2p% 낮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이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확대되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2017~2018년을 보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다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분석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표 III-3>을 보면 최근 16년간 중소기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3.0%로 대기업의 5.2%에 비하여 2.2p% 낮음.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익성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차이는 2010년 4.0p%까지 확대되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다시 2015년부터 증가하여 2018년은 3.7p%의 차이를 보임
 - 2023년의 경우에도 대기업(5.2 → 3.7%, 5.2 → 4.6%)과 중소기업(3.5 → 3.2%, 3.7 → 2.6%)의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모두 하락

<표 III-2> 대기업,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이

(단위: %)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이
2008	5.8	4.1	1.7
2009	5.4	3.3	2.1
2010	6.5	3.3	3.2
2011	5.3	3.1	2.2
2012	4.7	3.1	1.6
2013	4.7	3.2	1.5
2014	4.4	3.1	1.3
2015	5.5	3.6	1.9
2016	6.5	3.9	2.6
2017	7.6	4.0	3.7
2018	7.2	3.5	3.7
2019	4.8	3.1	1.7
2020	4.8	3.1	1.7
2021	7.0	3.5	3.5
2022	5.2	3.5	1.7
2023	3.7	3.2	0.5
평균	5.6	3.4	2.2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각 연도별

<표 III-3> 대기업, 중소기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차이

(단위: %)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매출액세전 순이익률 차이
2008	3.8	2.1	1.7
2009	5.0	2.2	2.8
2010	6.4	2.4	4.0
2011	4.6	2.2	2.4
2012	4.0	2.4	1.6
2013	3.0	2.6	0.4
2014	3.7	2.7	1.0
2015	5.5	3.6	1.9
2016	6.5	3.9	2.6
2017	7.6	4.0	3.6
2018	6.8	3.1	3.7
2019	4.2	3.1	1.1
2020	4.2	3.5	0.7
2021	8.0	4.4	3.6
2022	5.2	3.7	1.5
2023	4.6	2.6	2.0
평균	5.2	3.0	2.2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각 연도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 III-4>과 [그림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차이는 2024년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2018~2019년에는 다소 차이가 감소하였지만 2020년부터 다시 크게 확대됨

<표 III-4> 대기업,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차이

(단위: %)

시점	대기업 생산지수	중소기업 생산지수	생산지수 차이
2015	90.99	104.92	13.93
2016	92.97	107.81	14.84
2017	95.68	108.09	12.41
2018	98.22	105.03	6.81

<표 III-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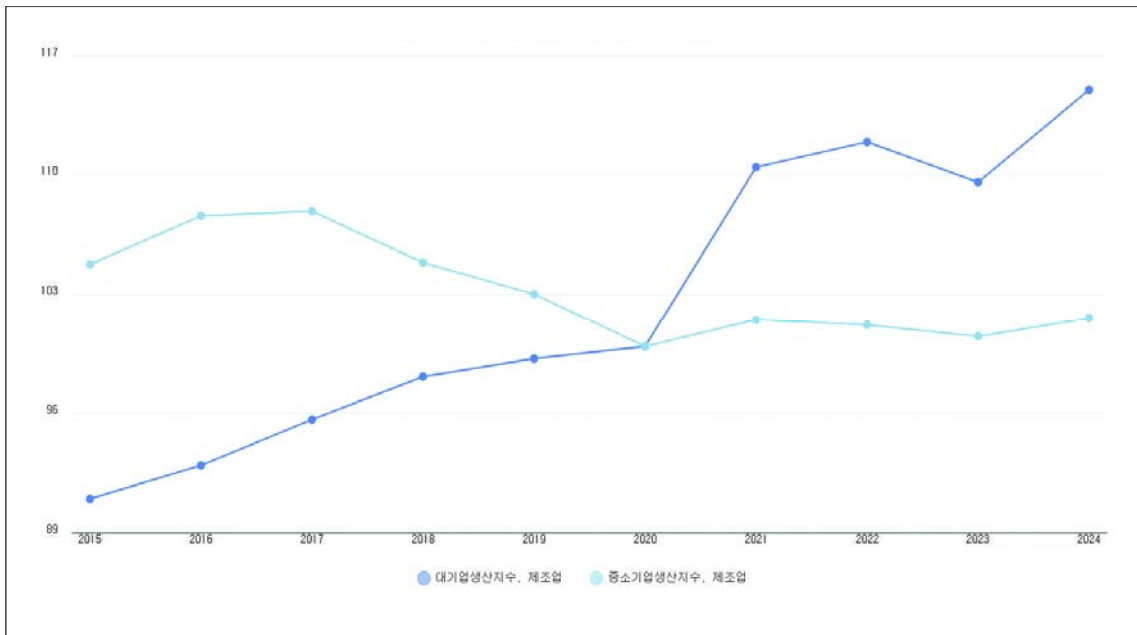
(단위: %)

시점	대기업 생산지수	중소기업 생산지수	생산지수 차이
2019	99.28	103.15	3.87
2020	100	100	0
2021	110.7	101.6	9.1
2022	112.2	101.3	10.9
2023	109.8	100.6	9.2
2024	115.3	101.7	13.6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기업규모별 제조업 생산지수(2020년=100), 각 연도별

[그림 III-2] 대기업,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차이(2020=100)

(단위: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기업규모별 제조업 생산지수(2020년=100), 각 연도별

- 이상의 분석 결과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음

나. OECD 주요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유사 제도 사례

1) 영국

- 영국은 경제적 취약 지역사회와 그곳에 위치한 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또는 영리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에 CITR(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지역사회 투자 세금 감면)이라는 세제혜택을 제공함
 -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disadvantaged communities)에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됨
 - 경제적 취약 지역사회: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각각 산출한 다중 빈곤지수별 상위 35%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빈곤지수 상위 35% 이내 또는 7개 빈곤 지표 중 최소 하나 이상이 상위 50위에 해당하는 자치구를 의미함⁸⁾
 - 「Finance Act 2002」에서 최초로 명시되었으며 현재는 「Income Tax Act 2007」, 「Corporation Tax Act 2010」, 「The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Amendment of Investment Limits) Regulations 2023」에 규정되어 있음
- CITR의 목표는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이라는 중개 기관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함
 - CDFI는 자금이 부족한 기업, 사회적 기업 및 지역사회 기반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에 특화된 기업을 뜻함
 - CDFI의 유형에는 지역사회 대출기금, 마이크로 금융기금, 사회적 은행(social bank) 등이 있음
 - 투자자들은 인증된 중개 기관에 투자하고, 투자를 받은 중개 기관은 이후 해당 지역사회 내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함
- 투자자 또는 투자 법인이 CITR을 적용받으려면 개인 또는 법인이 인증된 지역사회 개발 금융 기관(accredited CDFI)에 대출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지분 자본(share capital) 형태로 투자해야 함

8)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CITR): Material concerning the accredit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2019. 1.

- 투자자는 CDFI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으며 세금 회피의 목적 투자, 구성원 자본 출자 등의 경우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됨
 - 직접투자자는 CITR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인증된 CDFI를 통한 간접투자 여야 CITR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인증된 CDFI는 국무장관이 인증한 CDFI를 말하며 3년마다 재인증 신청이 필요함. 이에 투자 성공 여부나 안전성은 보장하지 않음
- CITR은 투자된 금액의 최대 25%(매년 5%)에 적용할 수 있으며, 투자한 연도를 포함한 5년 동안 분할하여 제공함
- 예를 들어 £10,000를 3년 만기 대출로 제공할 경우 총 세액공제액은 £10,000 × 5% × 3년 = £1,500로 계산됨
 - CITR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최소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함
 - 중간 상환이 존재할 경우에는 상환 잔액을 기준으로 감소분을 계산
 - 투자 수익(이자, 배당 등)은 일반 과세 대상이며 CITR에 의해 면세되지 않음
 - 2013년 4월 이후 투자분부터는 일부 공제를 이월하여 5년 내 사용이 가능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미사용분이 소멸됨
- CITR은 HMRC(영국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적용, 공제 철회 등을, DBT(영국 산업 통상부)에서 CDFI의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미국

- 미국은 저소득 지역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NMTC(New Markets Tax Credit Program, 신규 시장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NMTC 프로그램은 2000년 말에 미국 의회가 지역사회 개편 조세감면법(「Community Renewal Tax Relief Act of 2000」)의 한 부분으로 도입함
 - 현재 미국 내국세법인 「Internal Revenue Code」의 §45D New markets tax credit 에서 NMTC와 세부 규정을 정의하고 있음
 - NMTC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개발 금융 기관 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과 미국 국세청(IRS)이 담당하여 관리함

- NMTC는 저소득 지역(Low-Income Communities)에 위치한 기업 혹은 저소득 대상 인구에 대한 신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설계됨
 - 저소득 지역은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인구 센서스 지역(census tract)을 의미함
 - 빈곤율이 최소 20% 이상인 지역
 - 대도시권 외의 지역인 경우 중위 가구 소득이 지역 전체 중위 가구 소득의 80% 이하인 지역
 - 대도시권 내의 구역인 경우 중위 가구 소득이 지역 전체 중위 가구 소득 또는 대도시권 중위 가구 소득 중 더 큰 값의 80% 이하인 지역

- 투자자는 “적격 지역사회 개발 기구(Qualified Community Development Entity)”에 현금으로 투자하며, 투자를 받은 CDE는 그 돈을 저소득 지역 내 기업이나 서비스에 투자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적격 지역사회 개발 기구는 저소득 지역을 또는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임무를 가진 법인 또는 파트너십으로, 저소득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통해 책임성을 유지하며 국세청장에 의해 적격 지역사회 개발 기구로 인증을 받아야 함
 - CDE는 투자금의 85% 이상을 실제로 저소득 지역에 사용해야 함
 - 참고로 IRC §1044(c)(3)에 정의된 전문 소기업 투자회사 또는 「the 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 제103조에서 정의하는 지역 개발 금융기관은 별도의 투자 기준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투자자는 7년 동안 최초 투자금(적격 지역사회 개발 기구에 최초 발행 시 지급된 금액)을 총 7년간 총 39%를 제공받음
 - 1~3년까지는 5%, 4~7년까지는 6%의 공제세율을 해마다 적용함
 - 2025년 기준 적격 지분투자는 연 50억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란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조합(파트너십)의 자본 이득을 뜻함

- 적격 지분투자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적격 지역사회 개발 기구에 대한 지분투자를 의미함

- 해당 투자가 납세자에 의해 최초 발행 시(직접 또는 인수인을 통해) 오로지 현금으로 취득된 경우
 - 해당 현금의 85%가 적격 지역사회 투자에 사용된 경우
 - 해당 투자가 적격 지역사회 개발 기구에 의해 본 제도의 목적상 지정된 경우
- 적격 지분투자의 발행일로부터 7년 이내에 환수 사건(recapture event)이 발생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세금은 세액공제 환수 금액만큼 증가함
- 세액공제 환수 금액은 해당 투자가 없었을 경우 허용되지 않았을 모든 이전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총액 감소분과 이 금액에 대해 「내국세법」 §6621에 규정된 미납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를 합한 금액임(단 이자에 대해서는 세법상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 지분투자에 환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 CDE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투자금이 규정대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 투자가 7년 내에 상환(redemption)되는 경우
- 한 해 동안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NMTC 프로그램 금액의 한도는 2025년 기준으로 50억달러임
- 세액공제는 한도 내에서 국세청장이 선정한 적격 지역사회 개발 기구들에 각각 배정되며, 다음 기구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주어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본 또는 기술 지원한 실적이 있는 기구
 - 보유 자본의 85% 이상을 지역사회에 투자하기 위하여 적격 저소득 지역 투자 중 다수 지분을 비관련자에게 보유하게 할 계획이 있는 기구
 - 특정 회계연도에서 NMTC 한도가 기관에 배정될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회계연도의 한도에 추가됨
 - 단 초과분의 이월은 2030년 이후의 회계연도에는 반영되지 않고 소멸됨
- NMTC와 관련하여 세부 규정 또는 특례 조항이 존재함

- 투자자는 공제를 받은 만큼 원가에서 차감해야 함
- 다른 연방 세제혜택과 중복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이 마련됨
- 농촌지역 및 인구 유출 지역에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존재함

3) 독일

- 독일에는 한국과 같이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간접적 제도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협력이나 산업생태계 개선에 기여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세제 공제, 비용 인정, 보조금 우선지원 등)를 받는 구조임
- FZulG(Forschungszulagengesetz)는 연구개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로 2020년에 신설하였으며, 기업(대기업 포함)이 자사 또는 외부 인력의 연구개발(R&D)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의 최대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단독 R&D뿐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시에도 인건비 공제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에 연구를 위탁하거나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대기업의 직접 인건비와 중소기업 위탁비 모두 공제 항목에 포함됨
 -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특히 공급망 내 협력기반의 R&D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로 기금을 직접 출연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능상 유사성이 있음
- Regionalförderung(지역혁신기금 및 세제감면 프로그램)은 대기업이 저개발 지역의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또는 기반시설 구축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투자보조금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제공됨
 - 대기업이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기술지원센터, 직업훈련시설,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등에 투자한 경우에 자금 출연분은 세법상 감가상각 또는 비용 인정 처리 가능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기업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출연, 세제감면 구조에서 기능적으로 유사함
- Innovationsförderung durch Kooperationsprojekte는 기업 간 공동 R&D 프로젝트 보조금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스타트업·대학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하면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업은 자체부담금을 손금 산입(법인세 감면)할 수 있음

- 프로젝트 파트너에 중소기업이 포함될 경우 보조금 비율이 증가하는 구조로,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외부 파트너(중소기업)를 지원하면 해당 출연금은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제상 이점을 확보함
 - 직접적인 기금출연 세액공제는 없지만 공동 혁신기금 또는 협력 프로젝트에 출자하면 간접 세제 감면 효과를 제공하는 방식임
- 독일은 중소기업(Mittelstand)의 기술혁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ZIM(Zentrales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이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Zentrales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형 프로그램을, Innovationsprogramm은 기술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을, Mittelstand는 중소기업을 지칭함

<표 III-5> ZIM 지원 대상 및 요건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독일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직원 수 500명 이하)
참여 조건	독자적 프로젝트 또는 공동 프로젝트 가능 (2개 이상 기업·기관 참여 시 가점)
대기업 참여	허용되나 중소기업 주도 필수(대기업은 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프로젝트 조건	시장성과 기술성이 모두 있는 중소기업 주도 R&D 과제

자료: 저자 작성

- 독일 경제에서 중견·중소기업군은 전체 기업의 99% 이상, 고용의 약 60%, 총 R&D의 45%를 담당하는 핵심 주체임. 이들 기업의 자체적인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산학연 및 대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ZIM이 설계됨. ZIM은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 개발을 하거나 대기업·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정부가 해당 비용의 25~45%까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임
- ZIM은 무상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기술분야 제한 없이 모든 산업군의 R&D 과제를 지원하며, ICT, 바이오, 에너지, 소재 등 자유로운 주제 제안이 가능하며, 특히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가점을 부여함

<표 III-6> ZIM 지원 방식 및 범위

구분	단독 프로젝트	공동 프로젝트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산학연)
보조율	최대 45%	최대 55% (중소기업 2개 + 연구기관 참여 시)
지원 금액	약 €550,000 한도	€2,000,000까지 가능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2~3년 이내	-
연구기관 참여비율	총비용의 25%까지 인정 (단 기업이 주도해야 함)	-

자료: 저자 작성

- 이 제도는 특히 대기업과의 수직계열 협력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수평적 클러스터 형성을 장려하며,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주도권을 가지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독일 정부는 매년 약 5억유로 이상을 ZIM에 배정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는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국제 특허 보유 증가, 제품 상용화율 향상, 그리고 중소기업의 평균 고용 증가(약 3년 내 12% 수준)가 보고됨
-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 민간 협력을 공공보조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제도와 유사한 지향점을 갖고 있으며, 성과 중심 평가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함
- 한국의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도는 직접적인 인센티브 모델인 반면, 독일은 성과를 기반으로 간접 공제 중심의 제도 설계를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R&D 위탁, 인력양성 협력, 기술이전 등 실질적 협력 행위에 따라 추가 세제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기금출연만이 아닌 협력 활동의 실효성에 기반한 다중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이 시급함

4) 일본

- 일본에는 한국과 같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고 이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의 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한 정책적 취지를 가진 제도들이 다수 존재함. 특히 일본은 산학연·대중소 연계형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기금출연 또는 협력 참여에 따른 보조금·세제 혜택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산학연 연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中小企業等による産學連携技術開発事業)은 일본 경제산업성(METI), 중소기업청(SME Agency)이 주관하며 대기업이 출연하거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로, 대기업이 연구비 일부를 부담하거나 출연금 형태로 기여하면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대기업은 출연금을 법인세 감면 처리할 수 있음
 - 기금출연이나 공동연구 비용은 연구개발비(R&D 경비)로 분류되어 과세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함
 - 일본 세법상 일정 비율(6~10%) 이상 R&D 비용을 지출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액 10~15%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고도화기금 매칭사업(中小企業の高度化資金制度)은 대기업 또는 지방금융기관이 출연한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단지 내 스마트공장·물류혁신·직업훈련센터 등을 구축할 경우에 정부가 기금 대비 보조금 매칭하고, 출연기업에는 비용에 대해 지방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
 - 운영 주체는 각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일본정책투자은행(DBJ)임
 - 도요타자동차가 아이치현 소재 협력 중소기업단지에 기술지원센터 설립 출연 → 도요타는 일정 금액을 법인세 손비로 처리했고, 해당 프로젝트는 중기청의 고도화사업에 선정되어 1:1 정부보조금을 수령함
- 인재육성형 세제공제 제도(人材投資促進税制, 2022년 개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의 재교육·디지털 훈련을 공동 수행하거나 훈련기금에 출연할 경우, 교육훈련비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훈련기관이나 대학과 연계된 경우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단순 기금출연이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공동 인재개발 활동에 참여하거나 출연할 경우, 해당 비용이 세제혜택 대상이 됨
-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격차 해소와 공동 성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기술연계 촉진 프로그램(산학연 공동연구보조금)과 민간 기금 매칭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이 출연하는 기금을 정부가 매칭 보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 일본의 산업기술력강화기금은 대기업이 자사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향

- 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출연하면, 정부가 그 일부를 세액공제 또는 보조금으로 매칭해 주는 형태임.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성(METI)이 주관하고,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및 지역 상공회의소가 기획 및 성과관리에 참여함
- 성과 분석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R&D 수행능력, 원가 절감률, 품질 수준, 납기 이행률 등에서 비참여 기업 대비 15~30%의 개선을 보였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생산라인에 통합되는 파트너 전환 사례도 다수 보고됨. 일본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단순 하청이 아닌 전략적 공급 파트너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일본은 기금출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 제도는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인력양성에 기여하는 경우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특히 산학연 공동개발, 기술이전, 고도화 프로젝트 투자, 공동훈련센터 설립 등은 모두 출연금 또는 협력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R&D 비용 또는 손금산입 가능 항목으로 인정됨
 - 한국의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제도와 기능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기금출연 중심에서 성과기반 협력활동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확대할 경우 일본식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음

5) 프랑스

- 프랑스는 한국처럼 기금출연 자체에 대한 명시적 세액공제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R&D, 혁신투자, 산업 프로젝트에 협력하여 자금을 제공하거나 공동출자할 경우 세제 유인 및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CIR로 중소기업과의 R&D 협력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30% 내외)를 제공하고 있으며, PIA 및 BPI 기금 참여를 통해 공동 프로젝트 출연 시 보조금 및 세제 감면을 복합적으로 제공함. 출연금은 손금산입, 일부 투자자산은 감가상각 유예·가속 가능
- CIR(Crédit d'Impôt Recherche)는 프랑스 정부가 1983년 도입하여 지속 개편해 온 대표적 R&D 세액공제 제도로, 중소기업과의 공동 R&D 수행 시 대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의 연구개발비(직접 수행 + 위탁 수행 포함)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며,

- 중소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에 위탁한 R&D 비용도 포함됨. 자사 연구 인력 급여, 관련 설비 감가상각, 기술정보 구독료 등도 대상임
- 일반 기업 대상 연간 1억유로까지 30%, 초과분 5%, JEI(혁신형 중소기업)와의 협력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위탁비의 최대 2배까지 인정(특정 연구기관 또는 스타트업 대상)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공동 연구를 수행할 경우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출연 구조의 간접 인센티브 제공
- 프랑스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2010년부터 미래투자계획(Programme d'investissements d'avenir, PIA)을 수립하고, 정부 주도 하에 공공·민간 공동투자기금을 설계하여 운영 중임.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컨소시엄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국가가 그 투자금의 일정 부분(최대 50%)을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구조임
- PIA의 독특한 점은 프로젝트 선정 시 기금 수익률보다도 공공성과 협력 효과, 고용 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임. 따라서 PIA는 대기업 중심의 독점투자 방식이 아닌, 협력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PIA를 통해 그린수소, 디지털헬스, 반도체 클러스터, 스마트농업 등 분야에서 상생형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PIA 기금의 약 46%가 중소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로 배정됨
- 프랑스 경제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PIA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평균 R&D 집약도는 약 2.3배 높았고, 지원 종료 3년 내 고용 증가율이 11.7%에 달함.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R&D 과제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 확률이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동반성장위원회 중심 상생기금 출연, 세액공제 구조와 비교 시 PIA는 프로젝트 단위의 매칭펀드형 상생모델 및 세제 유인이라는 점에서 유사함
- BPIFrance(France Innovation & Co-Financing Programs)는 공공개발은행 주도 민간 상생형 투자 기금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공동 투자펀드(co-financing fund)를 조성하면 출연금은 손금산입하고 투자성과에 따라 정부 보조금·대출·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함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ESG, 디지털, 첨단기술 프로젝트에 출연하면 BPI가 기금

- 매칭 및 일부 투자 리스크 보전함. 투자 지출은 감가상각 또는 기술자산화 가능
- 출연금은 R&D 투자 또는 기술사업화 비용으로 간주되어 CIR 공제 대상으로 장기 프로젝트일 경우 투자유예 또는 감가상각 가속 적용
- 프랑스는 성과 기반 공동 투자 모델을 중심으로 한 간접적 세제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상생협력 기금 제도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만 구조적으로는 프로젝트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됨

6) 핀란드

- 핀란드는 한국과 같이 명시적으로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과 협력하거나 혁신 생태계에 기여할 경우 간접적인 세제혜택이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공동혁신(Co-innovation)과 혁신 생태계 중심 투자모델을 통해 상생형 산업 구조를 장려하며, 이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지원이 연계되고 있음
- 핀란드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Business Finland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 혁신 프로젝트(Co-innovation)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Business Finland Co-innovation 프로그램은 대기업이 특정 기술과제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이에 대해 해법을 제안하거나 솔루션을 제공하면 정부가 중소기업 R&D 비용을 최대 70%까지 보조하는 구조임. 대기업이 별도로 직접 재정지원을 하면 이는 세제 혜택의 일부로 간주됨
 - 대기업이 기금을 출연하거나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은 동일 프로젝트 내에서 정부로부터 직접 R&D 보조금 수령함. 대기업은 투입비용에 대해 세제상 R&D 비용으로 손금 처리 가능함
 - 이 모델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에 실질적 통합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국제 진출도 함께 지원하고 있음. 모든 프로젝트 종료 후, 민간과 공공기여 비율 및 협력지속성, 수출성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 리포트를 발간하고, 그 결과는 다음 사업의 선정 및 세제 인센티브 구조에 반영됨

- Veturi Program(Locomotive Program)은 대기업 주도형 상생 R&D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핀란드 대기업이 수십 개의 중소기업, 연구소, 스타트업과 산업 생태계 수준의 R&D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도록 유도함
 - 대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투자(출연)하여 공동 프로젝트 제안하고,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대응 매칭함
 -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은 세법상 혁신비용(R&D 지출)으로 처리되어 간접 세제 혜택 발생
- R&D 세액공제 시범제도(2021~2025년 한시적 시행)는 기업의 외부 협력 기반의 연구개발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함
 - 대학, 정부연구소, 중소기업과의 공동 R&D 수행 시, 과제비용 중 직접 인건비, 공동장비, 외부 위탁비용의 공제가 가능함
 - 총 R&D 비용의 150%까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며, 해당 항목의 실질 세액공제율은 5~10% 수준임
 - 대기업이 자체 R&D보다 협력형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이 더 크며, 간접적으로 상생협력 기금 또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능을 수행함

7) 소결

- OECD 주요국에서 운영 중인 대·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도들은 공통적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정부의 전략적 유인을 결합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독일, 일본, 프랑스, 핀란드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단순히 예산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대기업의 자발적 기여나 기금 조성 노력을 정책적으로 유인하고, 이에 대해 보조금, 세액공제, 기술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협력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함. 독일 ZIM이나 프랑스 PIA, 핀란드의 Co-innovation Program은 모두 R&D 성과, 고용 창출 효과, 기술 상용화 여부, 협력의 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출연금 공제보다는 협업의 실질적 성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성과기반 협력 모델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이들 국가는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과 기술력 강화를 중심에 두고 협력 구조를 설계하고 있음. 단순한 수직적 하청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중소기업이 기술 제공자 또는 공동연구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구조는 협력의 지속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모델로서의 타당성을 가짐
 - 성공적인 해외 사례들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단순히 윤리적 책임 차원이 아닌,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한국의 제도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기금출연 자체보다도 성과 기반의 상생 협력 구조와 제도적 피드백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진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제도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제도적 도입 배경과 정책 지향성이 매우 유사한 편임. 특히 대기업의 자발적 기금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스마트공장 보급, 판로개척 등에 재원을 공급하는 방식은 독일이나 일본 등의 사례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짐
- 한국의 산업 구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고도화되어 있고 공급망 구조 역시 다단계 하도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 마련이 필수적인 과제임.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기금출연을 통해 수직적 거래 관계를 수평적 협력 생태계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을 가짐
 -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축적된 실적을 보면 누적 7천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스마트공장 구축,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수출 확대, 정규직 전환 등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제도가 일정 부분 실질적 파급력을 보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함. 첫째, 현재는 기금출연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군에만 집중되는 한계가 있음. 둘째, 세액공제와 성과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기금의 성과에 대한 객관

적·정량적 평가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셋째,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기보다는 대기업 주도의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성과기반 세제 인센티브 체계 구축: 기금출연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중소기업 성과(생산성 향상, 기술 상용화, 고용 창출 등)에 연동하여 세액공제 수준을 차등화
 - 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중소기업 수혜 내역, 성과지표 등을 공개하고 민간평가위원회 또는 시민감시단 제도를 도입
 - 정책 연계성 강화: 지역혁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과 연계하여 기금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
- 결론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제도는 한국의 산업 현실과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제도이며, OECD 주요국 사례와 비교해도 정책의 정합성 및 도입 적합성이 충분히 높음. 향후에는 단순한 제도 유지보다는 질적 고도화를 통해 협력의 구조화와 성과의 제도화라는 두 축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음

다. 상생협력의 필요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단순한 기업 간의 관계 개선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중소기업의 현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
- 대기업은 제품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마케팅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부품·소재·서비스 등의 공급은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대기업의 공급망도 취약해지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조차 위기에 처할 수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통해 균형 잡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능력과 아이디어는 뛰어나지만 자금과 인프라가 부족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대기업과 협력할 경우 기술지원, 공동 R&D, 인력 교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고, 대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윈-윈 구조가 만들어질 것임. 특히 성과 공유제와 같은 제도는 기술개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청년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짐. 또한 대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상생협력은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은 소득 양극화와 불공정 경쟁,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이 자리 잡고, 중소기업도 적절한 이익을 보장받음으로써 경제 전체의 조화로운 성장이 가능함
-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기업 단독 경쟁이 아닌 밸류체인 전체의 경쟁력이 중요함. 한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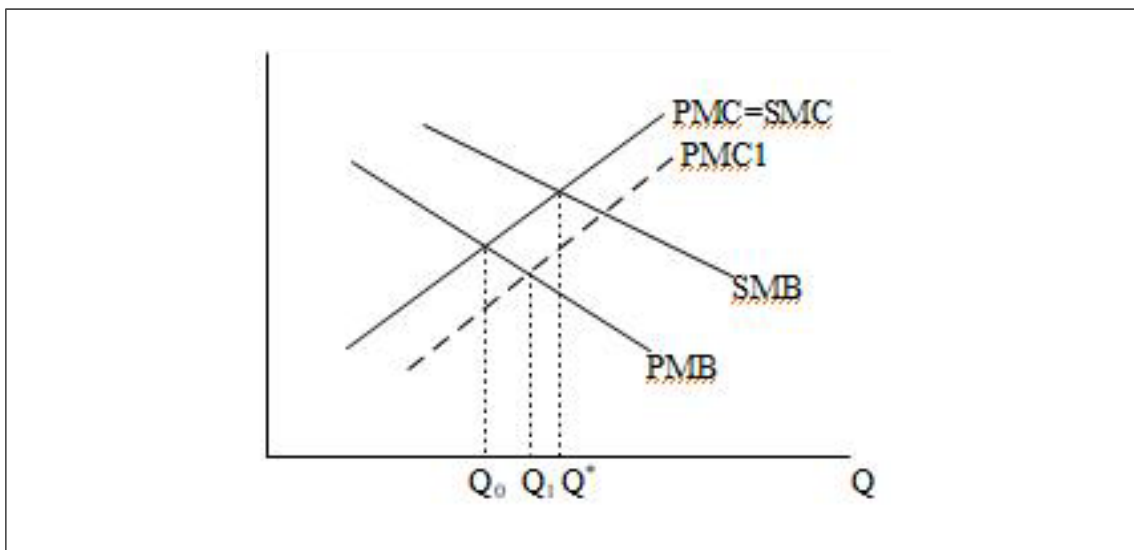
□ 상생협력은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대기업의 성장 전략이며,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임. 따라서 단기적인 비용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경제와 사회 전체가 혜택을 얻는 구조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 상생협력·동반성장 활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양극화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이러한 활동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발생
- 그러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상생협력 활동에서 대기업이 얻는 사적인 한계편익(Private Marginal Benefit, PMB)은 종종 이러한 사회적 편익(Social Marginal Benefit, SMB)과 비교할 때 부족함. 이는 대기업이 주로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상생협력 활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 감소나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로 인해 상생협력 활동으로 인해 얻는 PMB는 SMB보다 작아지는 경향이 있음(즉 $PMB < SMB$)
- 이러한 상황에서 상생협력 활동이 시장에 맡겨진다면, 대기업은 PMB와 사적인 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 PMC)이 일치하는 수준(Q0)까지만 상생협력

활동을 진행할 것임. 이는 대기업이 자신의 비용과 편익만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임. 결과적으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최적의 상생협력 활동 수준(SMB = Social Marginal Cost, SMC = PMC가 되는 수준)인 Q^* 보다 훨씬 적은 활동이 이루어지게 됨

-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은 대기업의 사적인 한계비용(PMC)을 감소시킴으로써($PMC \rightarrow PMC1$) 상생협력 활동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이는 사회적 최적 수준인 Q^* 에 근접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며, 결국 Q_0 에서 Q_1 로의 이동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을 증가시키는 정책적 접근이라 판단됨.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효율적이며 전체 사회의 이익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그림 III-3] 외부경제를 고려한 적정 상생협력 활동 규모



자료: 황희주 외(2019), p. 83, [그림 III-4]

- 결론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강한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 개입이 필수적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생협력의 결과는 단순한 기업 간 계약을 넘어 사회 전체로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를 발생시킴. 기업은 자신의 PMB만 고려하여 상생협력 수준을 결정하지만, 정부는 사회 전체 SMB를 고려해야 하므로 PMB보다 SMB가 클 경우, 민간

스스로는 최적 수준의 상생협력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세액공제, 기금 조성 장려,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

- 상생협력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키우는 긍정적 외부성을 가지므로, 민간 스스로 달성하기 어려운 최적 수준의 협력을 정부가 조세지원 등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상생협력에서 SMB가 PMB보다 큰 이유에 대해 긍정적 외부성을 고려하면 하기와 같음

- (중소기업 역량 강화)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기술력이 상승하고, 이는 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짐
- (고용증대 효과)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 (산업 생태계 안정화) 건강한 중소기업 기반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대기업의 장기적 이익에도 기여함
- (혁신 촉진) 대·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 공동 연구개발이 증가해 국가 전체 혁신역량 강화
- (사회적 신뢰 구축) 공정거래와 협력이 확산되면 사회 전반의 신뢰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효율성이 향상됨

□ 최근 미국 신행정부 출범, 국내 정치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외풍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2025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임. 특히 장기화 전망이 나오는 고환율 기조는 원자재 가격을 올려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더 옥죄 수 있음

2. 지원의 적절성

가. 정책수단 측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도입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기금을 출연할 경우 이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됨. 이러한 정부 개입 수단으로서 재정지원(직접 보조)과 조세지원(간접 지원) 중 어떤 방식이 보다 타당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김학수·박노욱(2013)이 제시한 수혜자, 보조방식, 지원시기, 행정집행 측면 등 선택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수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함

- (수혜자 측면 분석) 본 제도의 수혜자는 사업활동을 통해 명시적인 세금부담을 지고 있는 대기업으로, 세액공제 방식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수혜자와 납세자의 일치성(benefit principle)을 충족시킴. 또한 기금출연 기업이 다수에 이르기 때문에 일괄적·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재정지원 방식에 비해 정책목표 달성에 유리함. 김학수·박노욱(2013)은 수혜자의 납세부담이 명확할 경우 조세지원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제시한 바 있음
 -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도는 명시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기업만 혜택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수혜자와 조세부담 주체가 일치하는 형태임
 - 납세자(대기업)가 직접 수혜를 받음으로써 조세형평성 원칙과 부합하며, 기금출연이라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자발성 및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 반면 재정지원 방식은 수혜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비출연 대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여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의 기금 또는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수혜자와 납세자의 일치성(benefit principle)을 반영한 조세지원(tax expenditure)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OECD 주요국은 프랑스, 독일, 일본, 핀란드 등이 있음.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인력양성 등 상생협력 활동에 자금을 지출한 경우, 직접 보조금이 아닌 세액공제 또는 비용 인정 방식의 간접지원제도를 통해 정확히 그 자금을 지출한 기업(납세자)이 세제혜택을 수령하도록 설계하고 있음
 - 영국의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CITR)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와 그곳을 소재로 한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 개발 기관들에 출연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투자액에 대해 5년 동안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제공함
 - 미국의 New Markets Tax Credit(NMTC)은 저소득 지역에 위치한 기업 또는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사회 개발 기구에 투자자들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으로, 투자자들에게 7년간 총 39%의 세액공제를 제공함

- 프랑스의 Crédit d'Impôt Recherche(CIR)는 R&D 활동에 대한 대표적 세액공제 제도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스타트업·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동연구 시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며,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연구비를 지출하고 그에 대한 세액공제를 직접 적용받는 구조로 지출 주체(납세자)와 세제 수혜자가 일치함. 연간 R&D비용 1억유로 이하분에 대해 30%, 초과분 5%로 중소기업과의 협력 R&D는 최대 2배까지 비용으로 인정함
- 독일의 Forschungszulagengesetz(FZulG)는 기업의 R&D 인건비에 대해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과의 공동개발, 위탁개발 시 대기업이 납부한 비용을 포함.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탁 또는 함께 R&D를 수행하고, 그 인건비나 내부 비용에 대해 직접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 일본의 오픈이노베이션형 R&D 세액공제 제도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중소기업·대학 등과 공동으로 R&D를 수행하거나 해당 기관에 자금을 출연한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함(일반 R&D 세액공제율 6~10%보다 높은 최대 20%까지 확대 적용). 출연 또는 협력 R&D에 자금을 부담한 대기업이 직접 세액공제를 수령, 출연 대상 기관은 보조금 형태로는 수혜하지 않음
- 핀란드의 R&D 협력 세제지원 시범제도는 대기업이 대학·중소기업과 공동 R&D 수행 시 지출 비용의 최대 150%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음. 협력비용을 지출한 대기업이 손금산입 및 감가상각 혜택을 받으며, 협력기관은 별도의 직접 보조금 없이 간접 수혜 받음
- 캐나다의 SR&ED(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Tax Credit 은 대기업이 자체 R&D 또는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에 지출한 자금을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함. 비용 부담 주체인 대기업이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수혜받으며, 협력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구조는 아님

<표 III-7> 수혜자-납세자 일치 원칙을 반영한 OECD 주요국 사례

국가	제도명	구조	우리나라와 유사성
영국	CITR	지역 개발 기관에 출연한 주체가 세제 혜택 수령	출연=수혜 일치
미국	NMTC	지역 개발 기관에 출연한 주체가 세제 혜택 수령	출연=수혜 일치
프랑스	CIR	대기업이 비용 부담 공제 수령	기금출연과 유사한 비용 기반 구조
독일	FZulG	지출한 기업이 직접 공제 수령	세액공제 중심 협력 인센티브
일본	오픈이노베이션형	출연 주체가 세제 혜택 수령	출연=수혜 일치
핀란드	Co-innovation R&D	대기업이 손금산입 및 공제	생태계 기반 간접 유인
캐나다	SR&ED	협력비 지출 기업이 공제	협력형 R&D 지출 중심

자료: 저자 작성

- (지원시기 측면 분석) 상생협력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 관계 형성이 핵심인데, 세액공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장기간 출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매년 정부 예산심의를 거치는 재정지원 방식에 비해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짐.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인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 기금출연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 세액공제 방식은 연례 정부 예산 심의와 무관하게 법령 또는 세법상 규정에 따라 자동 적용되므로 기업 입장에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참여가 용이함
 - 상생협력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과 신뢰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재정지원은 예산 연도별로 집행이 제한되며, 국회 심의 및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배정이 유동적이므로 기업의 장기 참여 유인 측면에서 불리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조세지원 방식을 채택한 OECD 주요국들은 기업의 자율성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추
 - 영국의 CITR과 미국의 NMTC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각 국가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자의 출연을 직접 받는 지역 개발 기관 또는 기구에 대해서 각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관리, 심사, 또는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도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음

- 프랑스의 CIR(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어 예산심의와 무관하게 기업이 안정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의 협력 R&D에는 최대 2배의 비용을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 독일의 FZuIG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지출한 인건비를 최대 25%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며, 법령에 따른 자동 집행 구조로 장기적 예측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은 오픈이노베이션형 R&D 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외부 협력 지출에 대해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핀란드는 Co-innovation Program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연계하고 있음
-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세제 혜택의 수혜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조세지원 방식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상생협력의 지속성과 민간 주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 (행정집행 측면 분석) 재정지원 방식은 사업계획 심사, 집행, 사후 평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해 행정비용과 시간이 과다 소요됨. 반면 세액공제 방식은 기존 세무신고 체계 내에서 간편하게 운영 가능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정책집행의 신속성 확보에 유리함. 특히 기금출연 기업이 다수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행정 간소화가 더욱 중요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도 조세지출은 재정지출 대비 약 30~50%의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

- 세액공제는 기존 세무신고 체계에 연동되어 집행되므로 행정절차가 간소하고 집행 속도와 효율성이 높은 편임
 - 특히 다수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일괄적이고 자동화된 세무절차를 통해 기금출연 유도 및 관리가 용이함
 - 반면 재정지원은 사전 심사, 집행 감시, 사후 평가 등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여 행정비용이 과다하고 집행 지연의 우려가 존재함

□ 본 조세특례제도는 수혜자 특성, 보조방식의 일관성, 중장기 지원 유도 필요성, 행정집행의 효율성 등 모든 평가 기준에서 조세지원 방식이 재정지원 방식보다

우월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정부 개입 수단으로서 본 제도는 정책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세액공제 제도는 상생협력 유인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며, 이를 기반으로 성과연계형 차등 세액공제 방식 등 제도에 대한 고도화를 검토할 수 있음. 다만 향후 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되 기금운용 성과 및 협력 지속성에 따른 가감조정 방식 도입을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설계 측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도는 상생협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됨. 본 제도의 정책설계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작업임. 이에 본 분석에서는 투입 - 산출 - 중간 결과 - 최종 결과로 이어지는 논리모형의 적정성과 효과 전달 구조를 중심으로 정책설계상의 지원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함
-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타당성) 법적 근거로 「상생협력법」 제1조는 본 제도의 목표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경쟁력 강화, 양극화 해소, 국민경제 지속성장 기반 마련으로 명시하고 있음. 궁극적 정책목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요구(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이에 정책목표는 명확하고 사회적 필요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됨
- (논리모형의 구조와 적합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의 투입/활동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산출(운영목표)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을 증가시키는 것임. 중간목표(특정목표)는 상생기금을 활용하여 대·중소기업의 상생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최종 결과(일반목표)는 상생활동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를 줄이는 것임
- 투입 → 산출 연결은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통한 출연 유인 강화로 논리적 적합성이 확보됨. 산출 → 중간 결과 연결도 기금이 전액 상생활동에 사용되므로 구조적으로 타당함

〈표 III-8〉 논리모형의 구조와 적합성

단계	설정 내용	적합성 평가
투입 (활동)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 제공	적합 (출연 비용 절감 유인)
산출 (운영목표)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액 증가	적합 (실제 출연 증가 확인)
중간결과 (특정목표)	상생협력활동의 활성화	적합 (기금 전액 상생활동에 사용)
최종결과 (일반목표)	대·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양극화 해소	일부 제한적 (효과성 검증 필요)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6), 「조세특례 타당성 평가를 위한 연구」의 논리모형 재구성

- (효과 전달 분석) 황희주 외(2019)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혜기업은 비수혜기업에 비해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나,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미확인됨. 상생협력기금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부 인정되나, 미환류소득 추가과세 감면 수준을 초과하지 못함.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계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크지만 생산유발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상생활동 증가는 기업 내부 수익성 강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매출 성장, 자산 확대, 생산 유발 측면에서는 제한적 기여에 그쳤음. 결국 양극화 해소 및 경쟁력 강화라는 최종목표로의 효과 전달은 부분적으로만 실현된 것으로 보임
- 본 제도의 정책설계는 목표 설정과 논리모형 구축 면에서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투입 - 산출 - 중간 결과로의 흐름은 일관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나, 중간 결과(상생활동 증가)가 최종목표(경쟁력 강화 및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성과 전달 고리의 강화 필요성이 확인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도는 정책설계 구조의 적절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최종성과에 대한 효과전달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기반 환류체계 및 질적 관리 강화 필요. 이를 통해 제도 도입 취지인 대·중소기업 간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 지원

<표 III-9> 정책설계상 보완 필요사항

보완 항목	구체적 제언
성과기반 관리 강화	기금 활용 성과를 KPI로 설정하고, 실적 기반 성과평가 실시
질적 상생활동 유도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고부가가치 협력사업에 기금 우선 배정
환류 구조 구축	상생활동 성과가 확인된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공
지속 모니터링 체계화	기금 지출 이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자료: 저자 작성

다. 정책대상 측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상생협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와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생협력법」 제20조의5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상생협력법」 제2조 제1호), 「법인세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본 조세특례는 일차적으로 기금출연자에게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기금의 용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간 성과배분 사업, 기술협력 촉진 사업, 인력교류 확대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혜대상은 상생협력의 대상인 중소기업임
 - 수혜대상의 적절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경우 상생협력의 대상인 중소기업을 실질적인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커지고 있음. 특히 대기업 근로자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996년 69.7%에서 2024년 54.7%로 낮아짐

- 또한 최근 16년간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평균 3.4%로 대기업의 5.6%에 비하여 2.2p% 낮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이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확대되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2017~2018년을 보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다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분석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최근 16년간 중소기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3.0%로 대기업의 5.2%에 비하여 2.2p% 낮음.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익성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약 85%, 사업체 수의 99%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익성 양극화가 지속되어 상생협력 지원이 절실한 대상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금출연 및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책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상생협력의 대상인 중소기업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제도의 정책대상자는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라. 정책운영 측면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대가 지급에 대해 오용될 가능성 유의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 지급을 줄이고 부족분을 본 조세특례 대상이 되는 지원의 형태로 지급하면, 조세특례의 혜택으로 출연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가능
 - 특정 기업에 큰 금액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가 지급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지 협력재단에서 사전 승인이나 사후 점검 단계에서 자세한 검토가 필요
- 기존에 이루어지던 협력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을 상생협력 사업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의 혜택을 적용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증가를 유발하지 못하고 대기업만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점 발생

- 기존의 지원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추가지원을 유발하는 사업에 본 조세특례가 적용되도록 지원사업의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

3. 지원의 중복성

가. 타 제도와의 중복성

- 이하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도입·운영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목표를 지닌 제도들을 검토함으로써 유사·중복의 문제를 점검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본 조세특례제도에 의한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일반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인정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가 중복지원된다고 할 수 있음. 이하에서는 해당 제도들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중복성 여부를 검토함

<표 III-10> 기부금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4조)

구분	내용
도입목적	공익단체 및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부를 장려하고 민간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함
지원대상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상생협력기금 등
지원요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단체에 금전 또는 재산 출연
지원내용	소득금액의 10%(일반기부금) 또는 50%(특례기부금)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 절감)
지원현황	2023년 기준, 기부금 지출 규모 약 4조원

자료: 저자 작성

<표 III-1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구분	내용
도입목적	기업의 내부 유보소득을 투자, 상생협력, 임금증대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지원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지원요건	내부 유보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사용
지원내용	기금출연액의 300%를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미환류소득 추가과세(20%) 면제 효과 부여
지원현황	2022년 기준, 투자·상생협력 과세특례 적용 법인 수 약 1,200개, 미환류소득 차감액 20조원 이상

자료: 저자 작성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본 조세특례제도에 의한 10%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일반기부금’ 인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시 미환류소득에서 차감’이 중복으로 지원됨
 -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상생협력기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① 본 조세특례에 의한 ‘기금출연액×10%’가 세액공제되고 또한 ②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금출연액×법인세율(최대 25%)’만큼 세액 감소효과를 가져오며 ③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 추가과세 시 ‘기금출연액×300%’만큼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어 ‘기금출연액×300%×미환류소득추가과세 세율 20%’만큼 세액 감소효과를 가져옴
 - 이러한 중복지원의 효과를 모두 합치면 출연금액의 95%(=①10%+②25%+③60%)만큼 법인세 감소가 가능함. 추가적으로 법인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액감소의 효과가 104.5%(=법인세 95%+지방소득세 9.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출연금액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음

〈표 III-12〉 세액감소 효과 산정

(단위: %)

항목	적용 내용	세액감소율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특법」 제8조의3)	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10%
기부금 손금산입 효과 (「법인세법」 제24조)	출연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 (기준 소득금액의 10% 한도)	최대 25%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효과 (「조특법」 제100조의32)	출연금액의 300%를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약 60% (300%×20%)
합계		95% (법인세 기준)

자료: 저자 작성

- 지원의 중복성은 명확히 존재하며 현행 제도하에서는 출연금액 대비 세액감소효과가 과도할 수 있음. 특히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의 300% 미환류소득 차감 규정이 조세혜택 과다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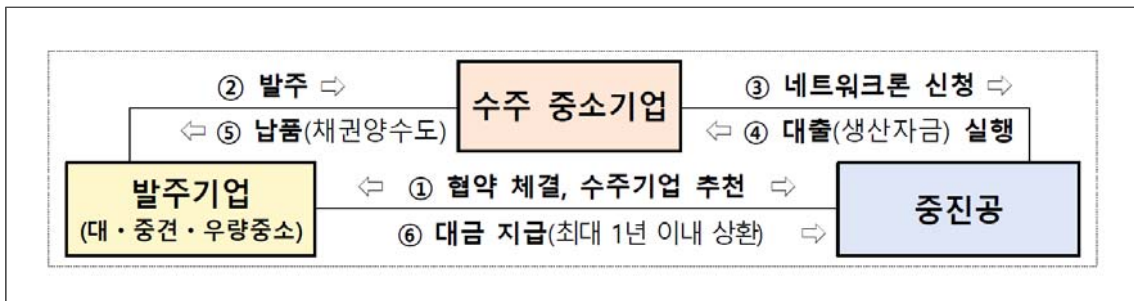
- (세액공제 조정) 본 조세특례 세액공제율 10%를 소폭 인하하거나, 투자·상생 촉진특례와의 중복 적용 제한 검토 가능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 손금산입 한도 초과 시 기금출연 추가공제 금지 검토 가능
 - (미환류소득 차감률 조정) 기금출연액 300% 차감 기준을 200% 수준으로 조정 검토
 - (정책목적 부합성 강화) 실제 상생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 차등 제공 검토
- 이와 같이 조세지원 과다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 출연의 진정성 훼손 및 왜곡 가능성,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추진하면서 아래 시나리오 2(투자·상생촉진 과세특례 차감비율 축소)를 우선 추진하여 조세혜택 총량을 적정화하고, 다음으로 시나리오 3(성과기반 세액공제 차등 적용)을 병행하여 기금출연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시나리오 1)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금산입 중복 적용 제한
 -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10%)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조세지원 과다 방지 및 제도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부를 통한 사회적 기여 유인 감소 및 기업의 자율적 인센티브 설계의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함. 이를 통해서 세제혜택 총량을 제한하여 출연의 진정성 회복 및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예측됨
 - (시나리오 2)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의 300% 차감 비율 축소
 - 미환류소득 차감 비율을 기존 300%에서 200%로 축소함으로써 조세감소 효과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및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상생활동에 대한 유인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과 세제혜택 매력도 일부 저하가 예측됨
 - (시나리오 3) 상생성과에 기반한 세액공제 차등 적용
 - 출연만으로 일률적 세액공제(10%) 부여하는 대신 상생 성과(예: 협력 중소기업 매출 증가율, 고용 창출 효과 등)에 따라 세액공제율 5~15%를 차등 적용함. 성과 중심 상생협력 촉진 및 정책목표 실현도 제고의 장점이 있으나 성과 측정·검증 부담 증가 및 행정관리 비용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예측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사업과 제도는 여러 부처에서 주관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금융, 연구개발, 근로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연구개발)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 혁신지원 사업(산업통상자원부)
 - (근로복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고용노동부)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소기업의 생산자금을 대기업, 중견기업, 우량중소기업과 협력하여 발주금액의 80%까지 365일 이내 단기자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관계형 정책금융임
 -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과 안정적인 납품을 촉진하고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및 협력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이 가능함

-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며 납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주기업이 상환함
 - 수주기업이란 계약(발주서)에 근거하여 발주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해당함
 - 발주기업이란 수주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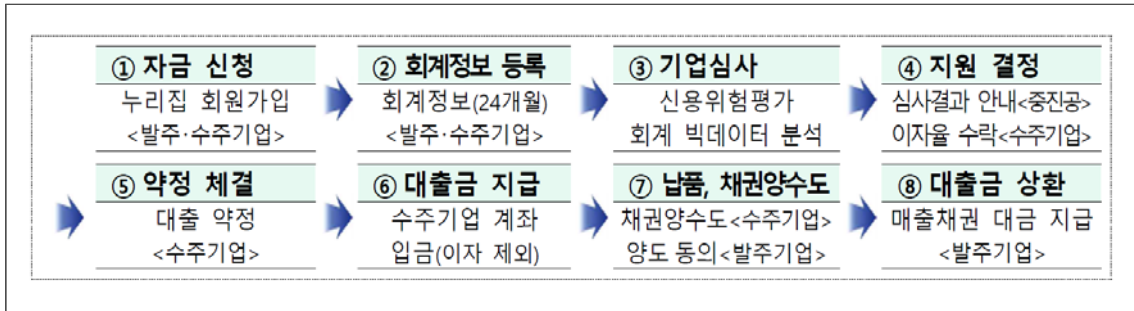
[그림 III-4]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방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사업공고 제2025-11호, 2025. 1. 9.

9) 백훈, 『범부처 상생협력정책 분석 및 과제 마련』, 수시연구 24-06,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 12.

[그림 III-5]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사업공고 제2025-11호, 2025. 1. 9.

- 지원 조건에는 연간 지원 한도, 건별 한도가 존재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할 수 있음
 - 연간 지원 한도는 발주기업은 100억원, 수주기업은 15억원임
 - 단 기업별 연간 지원 한도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 (제조업은 2분의 1 이내)
 - 건별 한도는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범위 내 신청이 가능함
 - 지원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0~365일(15일 단위) 중에서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주기업과 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최대 1년까지 선택 가능함
 -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를 뺀 것으로 정함
 - 발주기업과 수주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개별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르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의 2025년의 예산 규모는 1,395억원으로 전년(2024년 1,000억원) 대비 39.5% 증가함
 -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임
 - 지원 대상채권은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에 한함

-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음

- (지원대상)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후보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두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 (지원분야)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에 해당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이 가능함
-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이 지원하는 부문은 크게 탐색연구와 상생혁신 R&D 두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지원 규모와 기간이 상이함
- 탐색연구는 2025년 사업 공고 기준 과제당 6개월 동안 3,000만원을 지원함
 - 협력 R&D 기술성과 사업성을 검증하며 상생협력 전략서를 작성에 지원
 - 상생혁신 R&D는 과제당 2025년 사업 공고 기준 3년 동안 39억원을 지원하며 검증된 사업 아이템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함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과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다름
- 연구개발기관은 크게 네 유형으로 나뉘며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그 외로 나뉨

<표 III-13>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 비율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 지원 공고」, 사업공고 제2025-047호, 2025. 1. 20.

〈표 III-14〉 연구개발기관별 기관의 현금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 지원 공고」, 사업공고 제2025-047호, 2025. 1. 20.

-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¹⁰⁾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의 예산은 2023년 71억원, 2024년 90.5억원, 2025년 155.9억원을 편성함
 - 특히 2025년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2%(65.4억원) 확대함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정부가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임
 -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비용을 지원함
 - 매칭 비용은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
-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칭 지원에 참여해야 하며 분담금 기준으로 모기업 최소 투자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함

10)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 “올해 중견기업 R&D에 534억원 지원 전년 대비 53% ↑”」, 2025. 1. 20., HYPERLINK,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780&pWise=sub&pWiseSub=C1#policyNews>;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780&pWise=sub&pWiseSub=C1#policyNews>, 검색일자: 2025. 8. 25.

- 사업 대상 기업은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임

- 매칭 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음
 -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감독 대상 미포함 최대 2년,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ESG 평가 반영,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수여,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 보조금) 우대 및 각종 금융 혜택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의 공고에 의하면 2025년 본 사업의 정부 예산은 100억원임
 - 2023년은 75억원, 2024년은 90억원으로 꾸준히 사업 예산을 늘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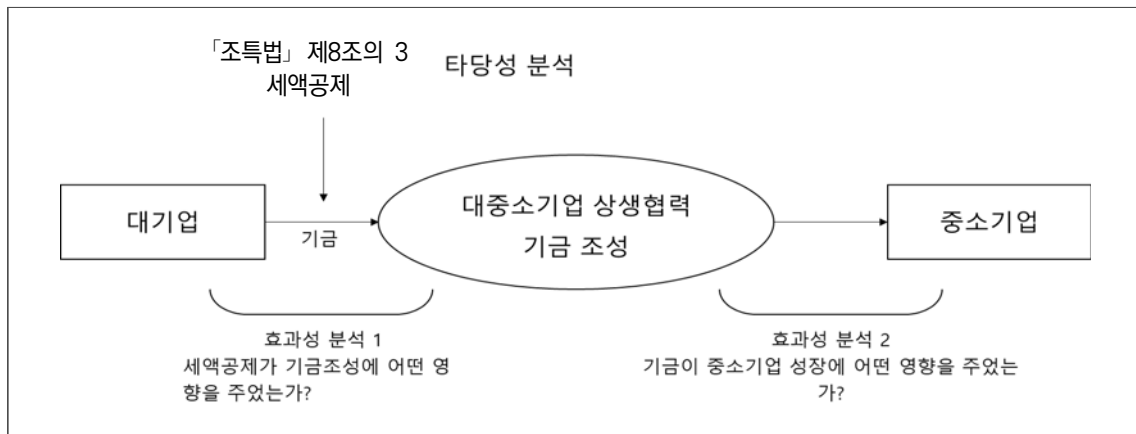
IV. 효과성 분석



IV. 효과성 분석¹¹⁾

- 본 장에서는 두 가지 분석을 통해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함
 - 분석 1. 세액공제가 기금출연액에 미친 영향
 - 분석 2. 출연기금이 협력중소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

[그림 IV-1] 연구 개요



자료: 저자 작성

- 효과성 분석 1. 세액공제가 기금출연액에 미친 영향
 - 주요 내용
 - 2016년 12월 법인세액 공제율이 7%에서 10%로 높아짐. 이 기간을 전후로 기금출연액/대상공제 기업 수 및 공제액 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법인세 세액공제가 상생협력 기금출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 분석 자료
 - 분석 기간: 세액공제율 변화 시점인 2016년 전후 5년 이상으로 함
 - 분석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 소속 기업 전수 혹은 일부 표본으로

11) 국세청,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등을 비롯하여 효과성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하여 연도별 1,000개 이상의 기업을 포함하며, 이들 기업은 연도별로 추적하여 관측되는 패널로 구축됨

- 관련 부처 자료: 법인세 세액공제액 등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기업재무 정보, 부처·기관 행정자료와 결합

○ 분석 방법론

- 시계열 분석 - 차우 검정(Chow test): 공제율이 변화한 2016년 전후를 기점으로 법인세액, 출연기금액에 구조적 변화가 존재하였는지를 검정
- 패널 자료 분석 - 이원 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s) 모형: 세액공제율 확대 개편 전후에 출연·공제액에 구조적 변화가 존재하였는지 검정
- 추가분석 - 로짓 회귀분석(Logit model) 모형: 기금출연 행태와 관련 있는 기업 특성 분석

○ 주요 결과

- 구조적 변화: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연결한 자료를 활용한 경우, 세액공제율 확대 전후로 기금출연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정도(기울기)와 표본기간 내 평균(절편) 모두 구조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함
 - 국세청 법인세액 공제내역과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확대 전후 세액공제액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정도와 표본기간 내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이원 고정효과 분석: 세액공제율 증가와 기금출연 및 세액공제액과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임

□ 효과성 분석 2. 기금출연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

○ 주요 내용

- 협력중소기업과 그 외 중소기업 간 성과 - 매출액, 영업이익, R&D 투자액 등으로 측정 - 를 비교하여 출연기금이 협력업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음

○ 분석 자료

- 분석 대상: 협력중소기업과 그 외 중소기업
- 분석 기간: 2014~2023년
- 자료: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와 KoDATA 결합

○ 분석 방법론: 패널 고정효과 모형

○ 주요 결과

- 협력중소기업은 다른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매출액, R&D 투자가 높은 경향을 보임. 영업이익은 협력중소기업과 다른 중소기업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모형마다 결과가 다름
- 법인세 세액공제율이 변화한 2016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가 적용된 2018년 제도 개편 전후 효과성 차이 분석: 매출액은 일부 모형에서 2016년·2018년 후에 협력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비하여 성과가 좋은 정도가 더 크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는 강건하지 않았음. 연구개발비(R&D)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추정 결과가 나왔으며, 영업이익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음

□ 관련 기존 연구: 황희주 외(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 법인세 세액공제율 변화가 기금출연액에 미친 영향과 기금출연이 협력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
 - 본 연구 역시 이와 같은 구조를 바탕으로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 법인세 세액공제가 기금출연에 미친 영향
 - 분석 자료: 패널데이터 및 설문조사
 - 패널데이터 분석 기간: 2011~2018년
 - 분석 결과: 본 연구와 유사하게 법인세 세액공제율 증가가 기금출연금 규모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짐을 보임
- 출연기금이 협력중소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
 - 분석 자료: 설문조사 및 출연금 사용내역과 재무정보를 결합한 패널데이터. 재무정보는 본 연구에서는 KoDATA를 활용한 반면,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신용평가 재무정보를 활용함
 - 분석 방법: 상향 점수 매칭(PSM) 방법 및 패널고정효과 분석
 - 분석 결과
 - PSM 분석: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에 비하여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등 성과가 높은 반면,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임

- 패널고정효과 분석: 수혜금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인건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임
- 활용한 자료 및 기간, 분석 방법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주요 분석 결과는 대체적으로 유사함

1. 세액공제율 변화와 기금출연의 관계 분석

가. 개요

- 본 장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조특법」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서 법인세 세액공제율 변화가 기금출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함
 - 효과성 분석을 위한 자료로 기획재정부·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연도별·기업별 법인세 공제 현황 및 일반 기업 정보,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활용함
 - 국세청 자료는 별도로, 다른 자료는 KoDATA와 결합하여 활용함
 - 국세청 데이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별·연도별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따른 법인세 공제 현황 및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이들은 패널데이터로 구축되었음
 - KoDATA를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별도로 활용함
 - 이상의 데이터들은 세액공제율 변화(7→10%) 시점인 2017년 전후를 포함하고 있어서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기금출연 및 법인세 공제의 변화 상황을 기업 단위에서 추적 조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음
- 이상의 가용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도 변화의 효과성을 분석함
 - 첫째, 세액공제율이 변화된 2017년 이전과 2017년 이후(2017년 포함)를 중심으로 세액공제율의 확대 개편 변화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기업의 수 및 출연 금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
 - 시계열 데이터의 구조적 변화를 식별하는 전통적인 계량경제학적 기법인 차우

- (Chow) 검정을 활용. 즉 세액공제율 확대 개편 전후로 기업의 기금출연과 이에 대한 세액공제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함
- 또한 기업 수준의 연도별 패널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기업의 보이지 않는 특성 및 연도 고정효과까지 동시에 통제한 이원 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s) 모형을 활용, 세액공제율 확대 개편 전후로 기금출연과 세액공제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함
- 둘째, 위 첫 번째 결과를 바탕으로 로짓 회귀분석 모형(logit model)을 활용하여 기업의 어떠한 특성이 기금출연 행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검증함
- 세액공제율 변화 정책과 기업 특성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가 세액공제율 변화 정책의 기업 특성별 수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나. 분석 모형 일반론

□ 차우(Chow) 검정 모형

- 차우 검정(Chow Test)은 시계열 자료나 단면 자료에서 회귀분석 모형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break) 여부를 검정하는 통계적 방법. 이 검정은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구조가 변했는지, 즉 회귀계수가 변화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됨
- 데이터상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기존의 예측 모형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차우 검정(Chow Test)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
- 이때 구조적 변화는 정책의 도입, 제도 변화, 경제 충격, 기업 전략의 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정책 효과 분석이나 사건 전후의 데이터 비교를 할 때 차우 검정(Chow Test)은 회귀모형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수단이 됨
- 차우 검정(Chow Test)의 전제 및 개념
 - 회귀모형은 두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에서의 잔차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등분산성을 가짐
 - 데이터가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구조 변화의 시점(또는 기준점)이 사전에 정해져 있음

- 두 구간에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구조는 같지만, 회귀계수(기울기나 절편 등)는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정함

○ 차우 검정(Chow Test)의 절차

$$F = \frac{(SSE_{pooled} - (SSE_1 + SSE_2))/k}{(SSE_1 + SSE_2)/(n_1 + n_2 - 2k)}$$

- SSE_{pooled} : 전체 구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잔차제곱합(Sum of Squared Errors 또는 Sum of Squared Residuals, SSE)을 구함
- SSE_1, SSE_2 :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두 개의 하위 구간으로 나누고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룹1의 잔차제곱합과 그룹 2의 잔차제곱합을 구함
- 위 세 개의 회귀 결과를 비교하여, 회귀계수가 서로 같은지(귀무가설) 혹은 다른지(대립가설)를 검정
- k : 회귀모형의 추정계수 수(설명변수+상수항 수)
- n_1, n_2 : 각 구간의 관측치 수

□ 고정효과 분석

○ 일원 고정효과 분석 모형(One-Way Fixed Effects, OWFE)

- 일반적으로 패널 데이터는 같은 개체(예: 개인, 기업 국가 등)를 여러 시점에 걸쳐 관측한 자료이므로 ‘개체 차원’과 ‘시간 차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데이터임
- 일원 고정효과 모형(One-Way Fixed Effects)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
 - 개체 고정효과(entity fixed effects): 패널 데이터에서 회귀분석을 할 때, 개체마다 ‘시간 불변의 고유한 특성’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회귀분석할 시 편향된 추정치가 나올 수 있음. 따라서 회귀식에 개체 더미변수를 포함함으로써 개체 고유의 특성을 제거하고 오직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의 효과만을 추정할 수 있음
 - 시간 고정효과(time fixed effects): 모든 개체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시점별 외부 요인(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왜곡된 독립변수의 효과 추정을 예방하기 위해 회귀식에 시간 더미를 포함함
- 개체 고정효과(entity fixed effects) 모형 수식

$$y_{it} = \alpha + \beta x_{it} + \mu_i + \epsilon_{it}$$

- y_{it} : 개체 i 의 t 시점 종속변수
 - x_{it} : 개체 i 의 t 시점 독립변수
 - μ_j : 개체 고정효과(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의 고유 특성)
 - ϵ_{it} : 오차항(관측되지 않은 요인)
 - β : 추정하고자 하는 계수
- 시간 고정효과(time fixed effects) 모형 수식

$$y_{it} = \alpha + \beta x_{it} + \lambda_t + \epsilon_{it}$$

- y_{it} : 개체 i 의 t 시점 종속변수
 - x_{it} : 개체 i 의 t 시점 독립변수
 - λ_t : 시간 고정효과(시점별 더미 변수)
 - ϵ_{it} : 오차항(관측되지 않은 요인)
 - β : 추정하고자 하는 계수
- 개체 고정효과(entity fixed effects)의 해석 및 장점
- 개체 내 변화(within-individual effect)를 분석: 각 개체(예: 사람, 기업, 국가)가 가진 고유한 특성은 제거한 뒤, 그 개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개체 내부의 변화를 분석함. 예를 들어 한 개인이 학위 취득 후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볼 때 개체 고유의 특성(예: 성격, 출신, 유전 등)은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다른 개체와의 비교 없이 오직 시간에 따른 변수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 누락 변수 편향(Omitted Variable Bias) 감소: 만약 독립변수와 관계 있는 개체의 고유한 특성이 회귀식에서 빠져 있다면 이는 오차항의 일부가 되어 편향된 회귀 추정치가 도출됨. 개체 고정효과는 이러한 개체 고유 특성을 회귀식 안에 포함하여 통제함으로써 독립변수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함
- 시간 고정효과(time fixed effects)의 해석 및 장점
- 외부 시점별 충격을 통제: 시간 고정효과(time fixed effects) 모형은 개체 간 차이는 중요하지 않거나 이미 균질하다고 간주할 경우(예: 동일 산업에 속한 기업들), 모든 개체에 공통적으로 작용한 거시적 충격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의 인과적 해석을 정교화함

- 누락 변수 편향(Omitted Variable Bias) 감소: 전국 단위로 시행된 법 개정, 제도 변화 등이 모든 개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칠 때, 시간 고정효과를 넣지 않으면 추정치가 왜곡될 수 있음

○ 이원 고정효과 분석(TWFE: Two-Way Fixed Effects) 모형

- 이원 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은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 ‘개체 간 이질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외부 요인’을 동시에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임
- 일반적으로 단일 고정효과 모형(one-way fixed effects)은 ‘개체 간 이질성(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 또는 ‘시점별 충격(모든 개체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외부 환경 변화)’ 중 하나만을 통제. 그러나 패널 데이터에서 개체(예: 기업, 국가, 개인 등)의 고유한 특성과 시점마다 발생하는 공통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계수 추정에 편향이 생길 수 있음
- 즉 이번 분석의 목적은 ‘개체 고정효과(individual fixed effects)’와 ‘시점 고정효과(time fixed effects)’를 동시에 통제하여 설명변수의 순수한 영향을 추정하는 데에 있음
- 모형 수식

$$y_{it} = \alpha + \beta x_{it} + \mu_i + \lambda_t + \epsilon_{it}$$

- y_{it} : 개체 i 의 시점 t 에서의 종속변수
- x_{it} : 설명변수
- μ_i : 개체 고정효과(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의 고유 특성)
- λ_t : 시점 고정효과(모든 개체에 공통된 시점별 충격)
- ϵ_{it} : 오차항(관측되지 않은 요인)
- β : 설명변수의 효과(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것)
- 이 모형은 개체 고정효과(μ_i)와 시점 고정효과(λ_t)를 더미변수(dummy variables) 또는 변환 방식(예: within transformation, demean)으로 통제. 이 과정을 통해 각 개체의 불변 특성(예: 제도, 지리, 문화 등과 같은 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과 시점별 공통 요인(글로벌 경제 상황, 유가, 팬데믹 등 특정 시점의 공통 요인)이 제거되며, 오직 설명변수의 변동(예: 정책 변화)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추정할 수 있음

□ 로짓 분석

- 패널 로짓 모형(Panel Logit Model)은 종속변수가 이항형(binary)인 경우에 사용하는 로짓(Logit) 모형을 패널 데이터(panel data)로 확장한 계량 분석 방법
- 기본적으로 로짓(Logit) 모형은 결과 변수가 0 또는 1(예: 취업 여부, 정책 수혜 여부, 구매 여부 등)일 때 사용되는데,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는 시간에 따라 개인(가구, 그룹)의 종속변수 값(0 또는 1)이 관찰되는 구조
- 패널 로짓 분석은 개체와 시간의 이중 구조를 활용하여 이항형 결과에 대한 더 정밀한 분석을 가능케 함
 - 패널 로짓 모형은 패널 데이터 분석과 마찬가지로 같은 개인(혹은 기업, 국가 등)을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관측 불가능한 특성(예: 성격, 동기, 유전적 요인 등)을 통제할 수 있음
 - 또한 동일한 개체의 시간에 따른 변화(within variation)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인과 추정이 가능함. 단순한 로짓 회귀보다 내생성 문제(omitted variable bias)에 덜 취약
- 패널 로짓(Panel Logit Model)의 구조

$$\Pr(y_{it} = 1 \mid X_{it}, \alpha_i) = \frac{\exp(X_{it}\beta + \alpha_i)}{1 + \exp(X_{it}\beta + \alpha_i)}$$

- exp(exponential function): 지수함수
 - y_{it} : 개체 i 의 시점 t 에서의 종속변수(0 또는 1)
 - X_{it} : 설명변수 벡터
 - β : 설명변수 계수(공통)
 - α_i : 개체 고유의 불변 특성(개체 고정 효과)
- 패널 로짓 모형은 위에서 언급한 개인 고유 특성인 α_i 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뉨
 - 고정효과 로짓 모형(Fixed Effects Logit Model): 각 개인의 고정된 특성을 별도의 효과로 추정하는 모형. 개인 고유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으나, 변수가 개인 내에서 변하지 않으면(즉 시간에 따라 값이 일정하면) 효과 추정이 불가능
 - 확률효과 로짓 모형(Random Effects Logit Model): 개인 고유의 효과를 확률적

오차항으로 간주. 개인 간 차이는 무작위이며, 개체 고유의 특성인 α_i 가 설명변수와 독립이라고 가정. 시간에 따른 개체의 불변(혹은 변화) 값을 제외하지 않고 분석에 모든 데이터를 활용

다. 분석 자료 소개

1) 국세청 데이터

□ 기초 통계량

- <표 IV-1>은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나타냄
 - 공제받음: 더미 변수로 분석 기간 동안 공제세액이 잡힌 기업(공제받음=1)과 잡히지 않은 기업(공제받음=0)으로 구분. 표본 중 12.6%가 세액공제를 받음 (평균 = 0.126)
 - 공제세액: 평균 공제세액은 약 2,865만 6,643원이며, 최대 약 127억원까지 존재. 분포가 매우 비대칭적으로 일부 초고액 법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자산총계: 평균 약 3조 9,836억원. 분석 표본 기업 중 자산이 가장 많은 기업의 자산총계는 약 466조원. 표본 표준편차가 매우 큼
 - 매출액: 평균 약 1조 8,443억원. 매출액이 가장 낮은 기업은 약 -6억 6천만원
 - 영업손익: 평균 약 1,282억원. 최대 영업 손실을 본 기업은 약 -33조 9천억원을 기록. 최대 영업이익은 약 43조 7천억원을 기록
 - 당기순손익: 평균 약 915억 5,600만원. 영업손익과 마찬가지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업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기업이 혼재
 -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는 약 1,485명이며, 최대 근로자 수는 11만 5,832명
- [그림 IV-2]는 분석 기간 동안 기업이 받은 공제세액의 연도 평균을 나타낸 그래프임
 - 2015년 이후 공제세액의 연도 평균값은 완만하게 증가하다 2017년 이후(2016년 이후 세액공제율이 7%에서 10%로 상승)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 특히 2021년 이후 공제세액 연도 평균 상승이 더 두드러짐
 - 2023년의 연평균 공제세액은 세액공제율 상승 이전인 2015년에 비해 약 9.38배 증가

<표 IV-1> 출연기업 재무정보 - 국세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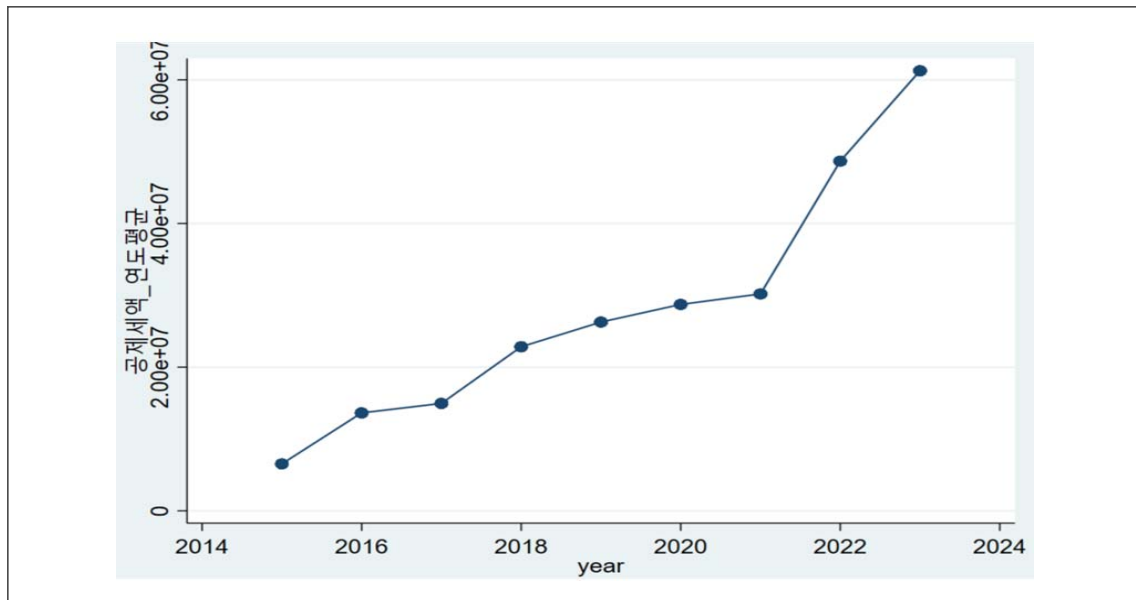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명, 개)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공제받음	0.126	0.332	0.000	1.000	5,895
공제세액	28	276	0	12,655	5,895
자산	3,983,550	22,228,929	0	466,138,189	5,895
매출액	1,844,275	8,342,016	-659	211,867,482	5,895
영업손익	128,203	1,224,339	-33,908,576	43,699,450	5,895
당기순손익	91,555	1,036,330	-25,297,712	32,815,126	5,895
근로자수	1,485	5,425	1	115,832	5,895
log(공제세액)	2.196	5.833	0.000	23.261	5,895
log(자산)	25.642	2.878	0.000	33.776	5,895
log(매출액)	24.148	6.336	0.000	32.987	5,895
log(영업손익)	22.953	2.838	0.000	31.408	5,895
log(당기순손익)	21.513	5.519	0.000	31.122	5,895
log(근로자수)	5.252	2.104	0.693	11.660	5,895

자료: 국세청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2]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기업의 법인세 공제액의 연도 평균 추이

(단위: 원)



주: 2015~2023년 자료
 자료: 국세청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결합 데이터

□ 기초 통계량

- <표 IV-2>는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나타냄
 - 총자산: 평균 약 1,900만원. 분석 대상 기업 중 총자산이 가장 많은 기업의 자산은 약 5,900억원 이상이며, 총자산이 가장 적은 기업은 약 -2억 5천만원 이하의 총자산을 기록. 변수 중 표준편차가 제일 큼
 - 매출액: 평균 약 847만 3,247원. 매출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약 2,118억 6,700만원이고, 가장 낮은 기업은 약 -4,700만원임. 분석 대상 변수 중 두 번째로 표준편차가 큼
 - 영업이익: 평균 약 43만 6,000원. 최대 영업 손실을 본 기업은 약 -368억 5,583만원을 기록. 최대 영업이익을 본 기업은 약 436억 9,945만원을 기록
 - 당기순이익: 평균 약 32만원. 최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약 -318억 2,606만원을 기록. 기업이 본 당기순이익의 최댓값은 약 328억 1,513만원
 - 합계 상시근로자 수: 평균 14.676명의 상시근로자가 있음. 최대 합계 상시근로자 수는 12만 8,169명

<표 IV-2> 출연기업 재무정보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단위: 천원, 명, 개)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총자산	18,863	1,429,234	-252,983	595,643,654	6,062,947
매출액	8,473	343,178	-47,258	211,867,483	6,062,947
영업손익	436	55,056	-36,855,833	43,699,451	6,062,947
당기순손익	323	50,997	-31,826,060	32,815,127	6,062,947
근로자수	14.676	267.589	0.000	128,169	6,062,947
log(출연금액)	0.005	0.301	0.000	24.962	6,062,957
log(자산)	13.449	1.940	0.000	27.113	6,062,070
log(매출액)	13.193	2.976	0.000	26.079	6,061,801
log(영업손익)	11.156	1.715	0.000	24.501	4,785,158
log(당기순손익)	10.941	1.732	0.000	24.214	4,883,355
log(근로자수)	1.404	1.270	0.000	11.761	6,062,947

자료: 한국평가데이터(KoDATA), 2014~2023년.

라. 세액공제율 변화와 기금출연의 관계 분석 결과

- 세액공제율 변화가 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장에서는 차우(Chow) 검정과 패널 고정효과를 활용하여 분석
 - 국세청 데이터 차우 검정: 종속변수를 ‘공제받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과 ‘log(공제세액)’ 두 가지로 설정하여 분석. 각각의 분석은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포함한 경우로 나뉜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차우 검정: 종속변수를 ‘출연함(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했으면 1, 안 했으면 0)’, ‘log(출연금)’으로 나누어 분석. 마찬가지로 각각 통제변수를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다시 구분하여 분석
 - 이원 고정효과 모형 분석: 통제변수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함

1) 국세청 데이터 분석 결과 [1]: Chow 검정

가) 종속변수로 ‘공제받음’을 사용하고 통제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회귀모형

$$\text{공제받음} = \beta_0 + \beta_1(\text{year}_i - 2017) + \epsilon_i$$

- 2017년 이전과 이후 기간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
 - 기울기(β_1)는 시간에 따라 공제받은 기업 비율이 증가하는 정도를, 절편(β_0)은 표본 기간 내에서의 공제받은 기업 비율을 나타냄
 - <표 IV-3>은 2017년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데이터의 구조적 변화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차우 검정에 앞서, 먼저 ‘공제받음’을 종속변수로 두 기간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 ‘공제받음’ 변수는 공제세액이 잡힌 기업일 경우 1, 아닌 기업은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 2017년 이후 기울기가 증가하였으나, 기울기는 2017년 이후 기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

- 절편은 다소 작아짐(0.0906 → 0.0773)
- 분석 결과로 도출된 기울기와 절편값이 모두 다른데, 이것이 우연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2017년의 세액공제율 변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아래 차우 검정을 통해 검증
- 구조적 변화 검증의 의미: 세액공제율이 증가한 2017년을 기점으로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공제받은 기업 비율 변화가 달라졌는지를 본다는 것임. 만약 구조적 변화가 있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세액공제율이 7 → 10%로 증가한 것이 기금출연 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3> 통제변수가 없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공제받음)

기간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2017년 이전	기울기	0.0074	0.0155	0.633
	절편	0.0906	0.0248	0.000
2017년 이후	기울기	0.0198	0.0025	0.000
	절편	0.0773	0.0081	0.000

주: 2017년은 '2017년 이후' 기간에 포함됨
 자료: 국세청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차우(Chow) 검정 결과

- 회귀분석 그래프의 기울기와 절편이 2017년을 기점으로 변했는지를 기울기, 절편, 기울기와 절편 모두의 변화로 각각 살펴봄
 - 기울기와 절편 각각은 2017년 전후로 변화가 없었으나, 기울기와 절편이 동시에 2017년을 기준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결합 검정(joint test) 결과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즉 전체 데이터의 구조적 변화(joint structural change)는 약하게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 IV-4> '공제받음'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없는 경우)

구분	카이제곱 통계량(chi2(1))	p값 (Prob > chi2)
기울기 동일성 검정(Slope)	0.62	0.4314
절편 동일성 검정(Intercept)	0.26	0.6096
기울기와 절편 동시 검정(Full Chow Test)	5.61	0.0604

자료: 국세청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종속변수로 ‘공제받음’을 사용하고 통제변수도 사용한 경우

□ 회귀모형

$$\text{공제받음} = \beta_0 + \beta_1(\text{year}_t - 2017) + X_t + \epsilon_t$$

□ 2017년 이전과 이후 기간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

- 2017년 전후 기간으로 나누어 앞서 가)의 모형에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함. 통제변수는 ‘자산총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근로자 수’에 각각 log를 취한 값을 사용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울기 - 시간에 따라 공제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정도: 2017년 이전(0.0160)과 2017년 이후(0.0259) 간에 수치상 차이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2017년 이전에는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유의한 모습을 보임
 - (2017년 이전) 매출액: 5% 유의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보임(0.007)
 - (2017년 이전) 근로자 수: 5% 유의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보임(0.038)
 - (2017년 이전) 절편: 5% 유의수준에서 유의. 절편이 음수(-)값
 - (2017년 이후) 기울기: 99% 신뢰수준에서 종속변수인 ‘공제받음’에 정의 영향을 미침(0.026)
 - (2017년 이후) 매출액: 99% 신뢰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침(0.008)
 - (2017년 이후) 영업손익: 99% 신뢰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침(0.03)
 - (2017년 이후) 당기순손익: 10%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침(-0.003)
 - (2017년 이후) 근로자 수: 99% 신뢰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침(0.044)
 - (2017년 이후) 절편: 99% 신뢰수준에서 - 1.296 절편값은 유의함

<표 IV-5> 통제변수가 있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공제받음)

기간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2017년 이전	기울기	0.0160	0.0183	0.381
	log(자산)	0.0047	0.0158	0.766
	log(매출액)	0.0070	0.0027	0.012
	log(영업손익)	0.0117	0.0074	0.114
	log(당기순손익)	0.0020	0.0026	0.446
	log(근로자수)	0.0376	0.0176	0.033
	절편	-0.7026	0.3446	0.041
2017년 이후	기울기	0.0259	0.0029	0.000
	log(자산)	0.0118	0.0080	0.139
	log(매출액)	0.0084	0.0022	0.000
	log(영업손익)	0.0298	0.0052	0.000
	log(당기순손익)	-0.0027	0.0015	0.074
	log(근로자수)	0.0442	0.008	0.000
	절편	-1.2956	0.1585	0.000

주: 2017년은 '2017년 이후' 기간에 포함됨
 자료: 국세청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차우(Chow) 검정 결과

- 분석 결과 2017년을 전후로 회귀선의 기울기, 절편 각각 구조적 변화는 발견되지 않음. 또한 기울기와 절편 모두에 대한 결합 검정(joint test)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2017년을 전후로 데이터의 구조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6> '공제받음'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있는 경우)

구분	카이제곱 통계량(chi2(1))	p값(Prob > chi2)
기울기 동일성 검정(Slope)	0.28	0.5937
절편 동일성 검정(Intercept)	2.44	0.1179
기울기와 절편 동시 검정(Full Chow Test)	2.77	0.2502

자료: 국세청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종속변수로 'log(공제세액)'을 사용하고 통제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회귀모형

$$\log(\text{공제세액}) = \beta_0 + \beta_1(\text{year}_t - 2017) + \epsilon_t$$

□ 2017년 이전과 이후 기간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

- 공제세액에 log를 취한 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2017년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눠 각각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
 - (2017년 이전) 절편: 1.5522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
 - (2017년 이후) 기울기: 99% 신뢰수준에서 2017년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log(공제세액)은 평균 0.373% 증가
 - (2017년 이후) 절편: 99% 신뢰수준에서 회귀선의 절편은 1.276
 - 2017년 이전과 이후 기울기와 절편이 모두 다른데, 이것이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아래 차우 검정을 통해 분석

<표 IV-7> 통제변수가 없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log(공제세액))

기간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2017년 이전	기울기	0.1220	0.2696	0.651
	절편	1.5522	0.4295	0.000
2017년 이후	기울기	0.3726	0.0451	0.000
	절편	1.2764	0.1409	0.000

주: 2017년은 '2017년 이후' 기간에 포함됨
 자료: 국세청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차우(Chow) 검정 결과

- 기울기와 절편 각각은 2017년 전후로 변화가 없었으나, 기울기와 절편이 모두 2017년을 기준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결합 검정(joint test) 결과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즉 2017년을 전후로 데이터의 구조적 변화가 발견됨

<표 IV-8> 'log(공제세액)'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없는 경우)

구분	카이제곱 통계량(chi2(1))	p값(Prob > chi2)
기울기 동일성 검정(Slope)	0.84	0.3593
절편 동일성 검정(Intercept)	0.37	0.5418
기울기와 절편 동시 검정(Full Chow Test)	7.73	0.0210

주: 2017년은 '2017년 이후' 기간에 포함됨
 자료: 국세청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라) 종속변수로 'log(공제세액)'을 사용하고 통제변수도 사용한 경우

□ 회귀모형

$$\log(\text{공제세액}) = \beta_0 + \beta_1(\text{year}_t - 2017) + X_t + \epsilon_t$$

□ 2017년 이전과 이후 기간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

- log(공제세액)을 종속변수로 둔 다)의 식에 5가지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2017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단순 회귀분석함. 통제변수는 '자산총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근로자 수'에 log를 취한 값을 사용
 - 기울기 - 시간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하는 정도: 2017년 이전(0.2581)과 2017년 이후(0.4831) 차이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2017년 이전에는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유의한 모습을 보임
 - (2017년 이전) 기울기: 정의 효과가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2017년 이전) 매출액: 5% 유의수준에서 log(매출액)은 log(공제세액)에 정의 영향을 미침(0.123)
 - (2017년 이전) 영업손익: 10% 유의수준에서 log(영업손익)은 log(공제세액)에 정의 영향을 미침(0.2212)
 - (2017년 이전) 근로자 수: 10%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침(0.638)
 - (2017년 이전) 절편: 5% 유의수준에서 2017년 이전 시기의 회귀선의 절편은 -12.75의 음수(-)값을 보임
 - (2017년 이후) 기울기: 1% 유의수준에서 2017년 이후 1년씩 증가할수록 log(공제세액)의 금액이 커짐(0.483)

- (2017년 이후) 매출액: 1% 유의수준에서 2017년 이후 $\log(\text{매출액})$ 은 $\log(\text{공제세액})$ 에 정의 영향을 미침(0.158)
- (2017년 이후) 영업손익: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침(0.559)
- (2017년 이후) 당기순손익: 10%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침(-0.045)
- (2017년 이후) 근로자 수: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침(0.758)
- (2017년 이후) 절편: 1% 유의수준에서 2017년 이후 시기의 회귀선의 절편은 -23.76의 음수(-)값을 보임

<표 IV-9> 통제변수가 있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log(\text{공제세액})$)

기간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2017년 이전	기울기	0.2581	0.3159	0.414
	$\log(\text{자산})$	0.0899	0.2911	0.757
	$\log(\text{매출액})$	0.1233	0.0509	0.016
	$\log(\text{영업손익})$	0.2212	0.1300	0.089
	$\log(\text{당기순손익})$	0.0336	0.0479	0.483
	$\log(\text{근로자 수})$	0.6377	0.3269	0.051
	절편	-12.7497	6.4169	0.047
2017년 이후	기울기	0.4831	0.0517	0.000
	$\log(\text{자산})$	0.2085	0.1472	0.157
	$\log(\text{매출액})$	0.1576	0.0391	0.000
	$\log(\text{영업손익})$	0.5582	0.0931	0.000
	$\log(\text{당기순손익})$	-0.0484	0.0273	0.076
	$\log(\text{근로자 수})$	0.7583	0.1576	0.000
	절편	-23.7585	3.0330	0.000

주: 2017년은 '2017년 이후' 기간에 포함됨
 자료: 국세청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차우(Chow) 검정 결과

- 분석 결과 2017년을 전후로 회귀선의 기울기, 절편 각각 구조적 변화는 발견되지 않음. 또한 기울기와 절편 모두에 대한 결합 검정(joint test)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2017년을 전후로 데이터의 구조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0> 'log(공제세액)'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있는 경우)

구분	카이제곱 통계량(chi2(1))	p값(Prob > chi2)
기울기 동일성 검정(Slope)	0.49	0.4822
절편 동일성 검정(Intercept)	2.41	0.1209
기울기와 절편 동시 검정(Full Chow Test)	2.94	0.2302

자료: 국세청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국세청 데이터 분석 결과 [2]: 고정효과 분석

□ 통제변수가 없는 이원 고정효과 모형

$$\log(\text{공제세액}_{it}) = \alpha + \beta \text{세액공제율 변화}_{it} + \mu_i + \lambda_t + \epsilon_{it}$$

-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 ‘개체 간 이질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외부 요인’을 동시에 통제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순수한 설명변수만의 효과를 보는 이원 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을 사용
 - log(공제세액): 종속변수로 기업 공제세액에 log를 취한 변수
 - 세액공제율 변화: 설명변수로 기업의 세액공제 신고연도가 세액공제율 변화가 적용되는 2017년부터라면 1, 2016년 이하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μ_i : 개체 고정 효과: 각 개체(ID: 여기서는 기업)마다의 고유의 평균을 제거(within transformation)하여 개체 간 불변 특성을 통제
 - λ_t : 연도 더미변수: 2023년이 기준년. 해당 연도에 모든 개체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점 고정 효과를 의미
- 분석 결과 및 해석
 - 기업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동시에 통제하여 세액공제율 변화가 기업의 공제세액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세액공제율 변화는 log(공제세액)에 99% 신뢰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침(2.396)

**<표 IV-11> 'log(공제세액)'을 종속변수로 한 이원 고정효과 분석 결과
(통제변수가 없는 경우)**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세액공제율 변화	2.395549	0.3152995	0.000

주: 1. 결정계수(R-squared) = 0.0388

2. 관측치: 5,895

자료: 국세청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통제변수가 있는 이원 고정효과 모형

$$\log(\text{공제세액}_{it}) = \alpha + \beta \text{세액공제율 변화}_{it} + X_{it} + \mu_i + \lambda_t + \epsilon_{it}$$

- 앞선 통제변수가 '없음' 이원 고정효과 모형에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받는 공제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개의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분석
 - log(공제세액): 종속변수로 기업 공제세액에 log를 취한 변수
 - 세액공제율 변화: 설명변수로 기업의 세액공제 신고 연도가 세액공제율 변화가 적용되는 2017년부터라면 1, 2016년 이하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X_{it} : 통제변수는 '자산총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근로자 수'에 각각 log를 취한 값을 사용
- 분석 결과 및 해석
 - 세액공제율 변화는 log(공제세액)에 99% 신뢰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침(3.54)
 - log(자산총계)는 10% 유의수준에서 log(공제세액)에 부의 영향을 미침(-0.585)
 - log(근로자 수)는 1% 유의수준에서 log(공제세액)에 정의 영향을 미침(0.966)

<표 IV-12> 'log(공제세액)'을 종속변수로 한 이원 고정효과 분석 결과(통제변수가 있는 경우)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세액공제율 변화	3.537281	0.4426989	0.000
log(자산)	-0.584507	0.3342956	0.081
log(매출액)	0.1726719	0.3241651	0.594
log(영업손익)	0.0598218	0.1300046	0.646
log(당기순손익)	0.059257	0.0520612	0.255
log(근로자수)	0.9655834	0.3578118	0.007

주: 1. 결정계수(R-squared) = 0.0679

2. 관측치: 3,995

자료: 국세청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결합 데이터 분석 결과 [1]: Chow 검정

가) 종속변수로 ‘출연함’을 사용하고 통제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회귀모형

$$\text{출연함} = \beta_0 + \beta_1(\text{year}_t - 2017) + \epsilon_t$$

□ 2017년 이전과 이후 기간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

- 위 식과 같이 ‘출연함’을 종속변수로 두고 통제변수 없이 회귀분석을 시행
 -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였을 때와 유사하게 회귀분석에서 기울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금출연 기업 비율이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냄
 - (2017년 이전) 기울기: 회귀계수가 -0.000028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2017년 이전) 절편: 1% 유의수준에서 2017년 이전의 회귀식의 절편은 0.00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 (2017년 이후) 기울기: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침(0.0000383)
 - (2017년 이후) 절편: 1% 유의수준에서 0.00014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 2017년 이전과 이후 기울기와 절편이 모두 다름. 이것이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아래 차우 검정을 통해 분석

<표 IV-13> 통제변수가 없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출연함)

기간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2017년 이전	기울기	-0.000028	0.0000182	0.124
	절편	0.0002182	0.0000371	0.000
2017년 이후	기울기	0.0000383	4.16e-96	0.000
	절편	0.0001484	0.0000133	0.000

주: 2017년은 ‘2017년 이후’ 기간에 포함됨
 자료: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의 결합 데이터

□ 차우(Chow) 검정 결과

- 회귀식의 기울기가 2017년을 기점으로 변했는지를 차우 검정(Chow test)을 통해 살펴봄

- 2017년 이후 회귀선의 기울기가 바뀌었음.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2017년을 기점으로 회귀선의 절편이 바뀌었는지를 검증한 결과,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절편이 바뀌었음
- 또한 2017년 이후 회귀선의 기울기와 절편이 모두 바뀌었는지에 대한 결합 검정(joint test) 결과도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종합하면 2017년을 전후로 기울기와 절편 각각도 변했으며, 기울기와 절편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도 강하게 데이터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4> ‘출연함’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없는 경우)

구분	카이제곱 통계량(chi2(1))	p값(Prob > chi2)
기울기 동일성 검정(Slope)	12.6	0.0004
절편 동일성 검정(Intercept)	3.15	0.0761
기울기와 절편 동시 검정(Full Chow Test)	65.00	0.000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의 결합 데이터

나) 종속변수로 ‘출연함’을 사용하고 통제변수도 사용한 경우

□ 회귀모형

$$\text{출연함} = \beta_0 + \beta_1(\text{year}_t - 2017) + X_t + \epsilon_t$$

□ 2017년 이전과 이후 기간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

- 더미변수인 ‘출연함’을 종속변수로 둔 가)의 식에 5가지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2017년 이후 데이터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하고자 함. 통제변수는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합계 상시근로자 수’에 각각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
- 2017년 이전에는 기울기와 log(매출액)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2017년 이후 시기에서는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 (2017년 이전) 기울기: 시간이 지날수록 ‘출연함’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2017년 이전) 총자산: 1% 유의수준에서 ‘출연함’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 (0.00027)
 - (2017년 이전) 영업손익: 1% 유의수준에서 ‘출연함’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 (0.00009)
 - (2017년 이전) 당기순손익: 1% 유의수준에서 ‘출연함’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0.00019)
 - (2017년 이전) 상시근로자 수: 1% 유의수준에서 ‘출연함’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0.00059)
 - (2017년 이전) 절편: 1% 유의수준에서 2017년 이전 시기의 회귀선의 절편은 - 0.0077의 음수(-)값을 보임
 - (2017년 이후) 기울기: 1% 유의수준에서 ‘출연함’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 (0.00005)
 - (2017년 이후) 총자산: 1% 유의수준에서 ‘출연함’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 (0.00019)
 - (2017년 이후) 매출액: 1% 유의수준에서 ‘출연함’ 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침 (-0.00006)
 - (2017년 이후) 영업손익: 1% 유의수준에서 ‘출연함’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 (0.000069)
 - (2017년 이후) 당기순손익: 1% 유의수준에서 ‘출연함’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0.0003)
 - (2017년 이후) 상시근로자 수: 1% 유의수준에서 ‘출연함’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0.0007)
 - (2017년 이후) 절편: 1% 유의수준에서 2017년 이후 시기의 회귀선의 절편은 - 0.00643의 음수(-)값을 보임
- 이와 같이 2017년 이전과 이후의 회귀식의 기울기와 절편이 다른데, 이것이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데이터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아래 차우 검정을 통해 검증

<표 IV-15> 통제변수가 있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출연함)

기간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2017년 이전	기울기	0.0000131	0.0000197	0.505
	log(자산)	0.0002719	0.0000194	0.000
	log(매출액)	7.24e-06	0.000013	0.577
	log(영업손익)	0.0000939	0.0000284	0.001
	log(당기순손익)	0.000193	0.0000337	0.000
	log(근로자수)	0.0005943	0.0000401	0.000
	절편	-0.0077418	0.000502	0.000
2017년 이후	기울기	0.0000514	4.87e-06	0.000
	log(자산)	0.0001946	8.68e-06	0.000
	log(매출액)	-0.0000558	7.94e-06	0.000
	log(영업손익)	0.000069	0.0000157	0.000
	log(당기순손익)	0.0002683	0.0000169	0.000
	log(근로자수)	0.0007044	0.0000249	0.000
	절편	-0.0064308	0.000223	0.000

주: 2017년은 '2017년 이후' 기간에 포함됨
 자료: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의 결합 데이터

□ 차우(Chow) 검정 결과

- 차우 검정 결과 세액공제율 변화로 2017년을 기점으로 데이터의 구조적 변화가 감지됨
 - 2017년 이후 회귀선의 기울기가 바뀌었음.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2017년을 기점으로 회귀식의 절편이 바뀌었는지를 검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절편이 변했음
 - 또한 2017년 이후 회귀선의 기울기와 절편이 모두 바뀌었는지에 대한 결합 검정(joint test) 결과도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종합하면 2017년을 전후로 기울기와 절편 각각도 변했으며, 기울기와 절편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도 통계적으로 데이터의 강한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 IV-16> ‘출연금’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있는 경우)

구분	카이제곱 통계량(chi2(1))	p값(Prob > chi2)
기울기 동일성 검정(Slope)	3.56	0.0590
절편 동일성 검정(Intercept)	5.7	0.0170
기울기와 절편 동시 검정(Full Chow Test)	9.23	0.0099

자료: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의 결합 데이터

다) 종속변수로 ‘log(출연금)’을 사용하고 통제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회귀모형

$$\log(\text{출연금}) = \beta_0 + \beta_1(\text{year}_t - 2017) + \epsilon_t$$

□ 2017년 이전과 이후 기간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

- 위 식과 같이 ‘log(출연금)’을 종속변수로 두고 통제변수 없이 회귀분석 시행
 - (2017년 이전) 기울기: 회귀계수가 -값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2017년 이전) 절편: 1% 유의수준에서 2017년 이전 기간의 회귀식의 절편은 0.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 (2017년 이후) 기울기: 독립변수가 ‘log(출연금)’ 변수에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침(0.0006)
 - (2017년 이후) 절편: 2017년 이후 시기의 회귀선의 절편은 1% 유의수준에서 0.00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IV-17> 통제변수가 없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log(출연금))

기간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2017년 이전	기울기	-0.0005315	0.0003439	0.122
	절편	0.004114	0.0007	0.000
2017년 이후	기울기	0.0006479	0.0000757	0.000
	절편	0.0028026	0.000245	0.000

주: 2017년은 ‘2017년 이후’ 기간에 포함됨
 자료: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의 결합 데이터

□ 차우(Chow) 검정 결과

- 차우 검정(Chow test) 결과 세액공제율 상승으로 인한 데이터의 구조적 변화가 확인됨
 - 2017년 이후 회귀선의 기울기가 바뀌었음.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2017년을 기점으로 회귀선의 절편이 바뀌었는지를 검증한 결과,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또한 2017년 이후 회귀선의 기울기와 절편이 모두 바뀌었는지에 대한 결합 검정(joint test) 결과도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종합하면 2017년을 전후로 기울기와 절편 각각도 변했으며, 기울기와 절편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도 통계적으로 데이터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 IV-18> 'log(출연금)'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없는 경우)

구분	카이제곱 통계량(chi2(1))	p값(Prob > chi2)
기울기 동일성 검정(Slope)	11.22	0.0008
절편 동일성 검정(Intercept)	3.13	0.0770
기울기와 절편 동시 검정(Full Chow Test)	61.70	0.000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의 결합 데이터.

라) 종속변수로 'log(출연금)'을 사용하고 통제변수도 사용한 경우

□ 회귀모형

$$\log(\text{출연금}) = \beta_0 + \beta_1(\text{year}_t - 2017) + X_t + \epsilon_t$$

□ 2017년 이전과 이후 기간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

- log(출연금)을 종속변수로 둔 다)의 식에 5가지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2017년을 전후로 회귀식이 달라졌는지 단순 회귀분석을 먼저 시행. 통제변수는 '총자산',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합계 상시근로자 수'에 각각 log를 취한 값을 사용
- 2017년 이전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식에서 기울기와 log(매출액)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2017년 이후 시기에서는 모든 변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함

- (2017년 이전) 기울기: 우상향 기울기가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2017년 이전) 총자산: 1% 유의수준에서 'log(출연금)'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0.005)
- (2017년 이전) 영업손익: 1% 유의수준에서 'log(출연금)'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0.0017)
- (2017년 이전) 당기순손익: 1% 유의수준에서 'log(출연금)'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0.0038)
- (2017년 이전) 상시근로자 수: 1% 유의수준에서 'log(출연금)'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0.011)
- (2017년 이전) 절편: 1% 유의수준에서 2017년 이전 시기의 회귀선의 절편은 -0.1476의 음수(-)값을 보임
- (2017년 이후) 기울기: 1% 유의수준에서 우상향 그래프(0.0009)
- (2017년 이후) 총자산: 1% 유의수준에서 'log(출연금)'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0.0036)
- (2017년 이후) 매출액: 1% 유의수준에서 'log(출연금)' 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침(-0.0011)
- (2017년 이후) 영업손익: 1% 유의수준에서 'log(출연금)'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0.0014)
- (2017년 이후) 당기순손익: 1% 유의수준에서 'log(출연금)'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0.005).
- (2017년 이후) 상시근로자 수: 1% 유의수준에서 'log(출연금)'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침(0.013)
- (2017년 이후) 절편: 1% 유의수준에서 2017년 이후 시기의 회귀선의 절편은 -0.1195의 음수(-)값을 보임

<표 IV-19> 통제변수가 있는 단순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log(출연금))

기간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2017년 이전	기울기	0.0002485	0.0003712	0.503
	log(자산)	0.0052036	0.000376	0.000
	log(매출액)	0.0001195	0.0002461	0.627
	log(영업손익)	0.00172	0.0005392	0.001
	log(당기순손익)	0.0037671	0.000645	0.000
	log(근로자수)	0.0112069	0.0007627	0.000
	절편	-0.1476225	0.0097083	0.000
2017년 이후	기울기	0.0009012	0.0000895	0.000
	log(자산)	0.0036181	0.0001626	0.000
	log(매출액)	-0.0011231	0.0001503	0.000
	log(영업손익)	0.0014057	0.0002729	0.000
	log(당기순손익)	0.0049951	0.0003039	0.000
	log(근로자수)	0.0127897	0.0004576	0.000
	절편	-0.1195385	0.0042319	0.000

주: 2017년은 '2017년 이후' 기간에 포함됨.

자료: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의 결합 데이터.

□ 차우(Chow) 검정 결과

- 차우 검정(Chow test) 결과 세액공제율 상승으로 인한 데이터의 구조적 변화가 확인됨
 - 2017년 이후 회귀선의 기울기가 바뀌었음.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2017년을 기점으로 회귀선의 절편이 바뀌었는지를 검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절편이 변했음
 - 또한 2017년 이후 회귀선의 기울기와 절편이 모두 바뀌었는지에 대한 결합 검정(joint test) 결과도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종합하면 2017년을 전후로 기울기와 절편 각각도 변했으며, 기울기와 절편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도 통계적으로 데이터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 IV-20> 'log(출연금)'을 종속변수로 한 차우 검정 결과(통제변수가 있는 경우)

구분	카이제곱 통계량(chi2(1))	p값(Prob > chi2)
기울기 동일성 검정(Slope)	2.92	0.0873
절편 동일성 검정(Intercept)	7.12	0.0076
기울기와 절편 동시 검정(Full Chow Test)	10.02	0.0067

자료: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의 결합 데이터

4)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결합 데이터 분석 결과 [2]: 고정효과 분석

□ 통제변수가 없는 이원 고정효과 모형

$$\log(\text{출연금}_{it}) = \alpha + \beta \text{세액공제율 변화}_{it} + \mu_i + \lambda_t + \epsilon_{it}$$

-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 ‘개체 간 이질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외부 요인’을 동시에 통제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순수한 설명변수만의 효과를 보는 이원 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을 사용
 - log(출연금): 종속변수로 상생협력기금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들의 출연금에 log를 취한 변수
 - 세액공제율 변화: 설명변수로 기업의 세액공제 신고 연도가 세액공제율 변화가 적용되는 2017년부터라면 1, 2016년 이하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μ_i : 개체 고정효과
 - λ_t : 시간 고정효과
- 분석 결과 및 해석
 - 기업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동시에 통제하여 세액공제율 변화가 상생협력기금에의 기업 출연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세액공제율 변화는 log(출연금)에 99% 신뢰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침(0.0072)

<표 IV-21> 'log(출연금)'을 종속변수로 한 이원 고정효과 분석 결과(통제변수가 없는 경우)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세액공제율 변화	0.0072131	0.0008393	0.000

주: 1. 결정계수(R-squared) = 0.0001

2. 관측치: 6,062,947

자료: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의 결합 데이터

□ 통제변수가 있는 이원 고정효과 모형

$$\log(\text{출연금}_{it}) = \alpha + \beta \text{세액공제율 변화}_{it} + X_{it} + \mu_i + \lambda_t + \epsilon_{it}$$

- 앞선 통제변수가 ‘없는’ 이원 고정효과 모형에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 출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개의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분석
 - log(출연금): 종속변수로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기업들의 출연금에 log를 취함
 - 세액공제율 변화: 설명변수로 기업의 세액공제 신고 연도가 세액공제율 변화가 적용되는 2017년부터라면 1, 2016년 이하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X_{it} : 통제변수는 ‘총자산’,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합계 상시근로자수’에 각각 log를 취한 값을 사용
- 분석 결과 및 해석
 - 세액공제율 변화는 log(출연금)에 99% 신뢰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침(0.007)

<표 IV-22> ‘log(출연금)’을 종속변수로 한 이원 고정효과 분석 결과
(통제변수가 있는 경우)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세액공제율 변화	0.0071935	0.0009822	0.000
log(자산)	-0.0002977	0.0002402	0.215
log(매출액)	0.0004669	0.0003559	0.190
log(영업손익)	-0.0001809	0.000297	0.543
log(당기순손익)	-0.000226	0.0002699	0.402
log(근로자수)	0.0002507	0.0004174	0.548

주: 1. 결정계수(R-squared) = 0.0001

2. 관측치: 4,652,738

자료: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의 결합 데이터

마. 기업 특성과 기금출연의 관계 분석 결과

1) 국세청 데이터 분석 결과: 로짓 분석

- 기업의 어떠한 특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여섯 가지 설명변수를 설정하여 ‘공제받음’ 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logit) 회귀분석을 실시

- 종속변수는 ‘공제받음’ 변수로 공제세액이 잡혔을 경우 1, 아닐 경우 0의 값을 가짐
- 설명변수는 자산총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유형자산, 근로자 수에 각각 log를 취한 변수를 사용

$$\begin{aligned} LOGIT(P(\text{공제받음}_{it} = 1)) = & \alpha + \beta_1(\ln\text{자산총계}_{it}) + \beta_2(\ln\text{매출액}_{it}) \\ & + \beta_3(\ln\text{영업손익}_{it}) + \beta_4(\ln\text{당기순손익}_{it}) \\ & + \beta_5(\ln\text{유형자산}_{it}) + \beta_6(\ln\text{근로자수}_{it}) + \epsilon_{it} \end{aligned}$$

- 세액공제율 상승 시점을 고려하여 3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
 - 전체 기간, 세액공제율이 바뀌어 적용되기 시작한 2017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기간을 나누어 총 3개의 시기를 대상으로 로짓 회귀분석을 함

□ 분석 결과

- 전체 기간
 - log(자산총계):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자산총계가 클수록 해당 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커짐(0.312)
 - log(매출액):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매출액이 클수록 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커짐(0.08)
 - log(영업손익):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영업손익이 클수록, 즉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커짐(0.175)
 - log(유형자산): 90%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유형자산이 많을수록 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작아짐(-0.044)
 - log(근로자 수):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커짐(0.3)
 - 종합하면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상생협력기금에 기금을 출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높음
- 세액공제율 변화 이전
 - log(근로자 수):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커짐(0.3676)
 - 나머지 설명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세액공제율 변화 이후

- log(자산총계):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자산총계가 클수록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커짐(0.3)
- log(매출액):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매출액이 클수록 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커짐(0.079)
- log(영업손익):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영업손익이 클수록, 즉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커짐(0.198)
- log(유형자산): 90%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유형자산이 많을수록 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작아짐(-0.048)
- log(근로자 수):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커짐(0.3)
- 종합하면 세액공제율이 바뀌어 적용된 2017년 이후 기간 동안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상생협력기금에 기금을 출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높음

<표 IV-23> 로짓 분석 결과(국세청 데이터)

분석 기간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전체	log(자산)	0.3118	0.0605	0.000
	log(매출액)	0.0802	0.0128	0.000
	log(영업손익)	0.1750	0.0552	0.002
	log(당기순손익)	-0.0013	0.0071	0.860
	log(유형자산)	-0.0441	0.0257	0.086
	log(근로자수)	0.3029	0.0434	0.000
세액공제율 상승 이전	log(자산)	0.123	0.1837	0.504
	log(매출액)	0.113	0.0735	0.126
	log(영업손익)	0.0574	0.1658	0.729
	log(당기순손익)	0.0111	0.0214	0.604
	log(유형자산)	0.149	0.1123	0.184
	log(근로자수)	0.368	0.1193	0.002

<표 IV-23>의 계속

분석 기간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세액공제율 상승 이후	log(자산)	0.304	0.0653	0.000
	log(매출액)	0.0795	0.0134	0.000
	log(영업손익)	0.198	0.0593	0.001
	log(당기순손익)	-0.00309	0.0077	0.689
	log(유형자산)	-0.0481	0.0266	0.070
	log(근로자수)	0.303	0.0474	0.000

주: 1. 전체 기간 관측치 = 3,995
 2. 세액공제율 상승 이전 관측치 = 850
 3. 세액공제율 상승 이후 관측치 = 3,145

자료: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의 결합 데이터

2)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결합 데이터 분석 결과: 로짓 분석

- 위 1)에서 했던 로짓 분석을 상생협력기금 데이터와 한국평가데이터를 결합한 데이터로 시행
 - 상생협력기금 데이터와 한국평가데이터를 결합한 데이터는 2014년부터 2023년 까지 기업별·연도별 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및 각종 일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해당 결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짓 회귀분석(logit model) 통해 기업의 어떠한 특성이 기금출연 행태와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함
 - 이전 절에서 세액공제율 변화가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기금출연 여부와 출연 금액, 공제액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기업 특성과 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

- 기업의 어떠한 특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출연함’ 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5개의 설명변수를 설정하여 로짓(logit) 회귀 분석을 함
 - 종속변수는 ‘출연함’ 변수로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을 했을 경우 1, 아닐 경우 0의 값을 가짐

- 설명변수로는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합계 상시근로자 수에 각각 log를 취한 값을 사용
- 로짓 회귀분석 모형은 아래와 같음. 패널 데이터이므로 아래 첨자 i 는 기업, t 는 시점을 의미

$$\begin{aligned} LOGIT(P(\text{출연함}_{it} = 1)) = & \alpha + \beta_1(\ln\text{총자산}_{it}) + \beta_2(\ln\text{매출액}_{it}) \\ & + \beta_3(\ln\text{영업이익}_{it}) + \beta_4(\ln\text{당기순이익}_{it}) \\ & + \beta_5(\ln\text{합계 상시근로자 수}_{it}) + \epsilon_{it} \end{aligned}$$

- 1)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율 상승 시점을 고려하여 분석 기간을 3개의 기간으로 나눔
 - 전체 기간, 세액공제율이 바뀌어 적용되기 시작한 2017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기간을 나누어 총 3개의 시기를 대상으로 로짓 회귀분석을 시행

□ 분석 결과

- 전체 기간
 - log(매출액):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매출액이 클수록 기업이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커짐(0.635)
 - log(당기순이익): 90%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클수록 기업이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커짐(0.09)
 - log(합계 상시근로자 수):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합계 상시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커짐(0.84)
 - 종합하면 매출액, 당기순이익, 합계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상생협력기금에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높음
- 세액공제율 변화 이전
 - log(총자산):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총자산이 클수록 기업이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작아짐(-0.327)
 - log(매출액):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매출액이 클수록 기업이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커짐(0.828)
 - log(영업이익):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클수록 기업이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커짐(0.557)
 - log(당기순이익): 95%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클수록 기업이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작아짐(-0.137)

- log(합계 상시근로자 수):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합계 상시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기업이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커짐(0.727)
- 종합하면 세액공제율이 상승하기 이전 기간 동안 매출액, 영업이익, 합계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상생협력기금에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높음. 반면 총자산, 당기순이익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생협력기금에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낮음

○ 세액공제율 변화 이후

- log(총자산):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총자산이 클수록 기업이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커짐(0.11)
- log(매출액):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매출액이 클수록 기업이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커짐(0.557)
- log(영업손익): 95%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클수록 기업이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작아짐(-0.112)
- log(당기순이익):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클수록 기업이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커짐(0.155)
- log(합계 상시근로자 수): 99% 신뢰수준에서 기업의 합계 상시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기업이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커짐(0.882)
- 종합하면 세액공제율이 상승한 이후 기간에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합계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상생협력기금에 기금을 출연할 확률이 높음. 반면 영업이익이 적은 기업일수록 기금에 출연할 확률이 높음

<표 IV-24> 로짓 분석 결과(상생협력기금 데이터와 한국평가데이터를 결합한 자료)

분석 기간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전체	log(자산)	0.0207	0.0386	0.591
	log(매출액)	0.6349	0.0528	0.000
	log(영업손익)	0.0148	0.0524	0.777
	log(당기순손익)	0.0888	0.0475	0.062
	log(근로자수)	0.8388	0.0330	0.000

<표 IV-24>의 계속

분석 기간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세액공제율 상승 이전	log(자산)	-0.3265	0.0834	0.000
	log(매출액)	0.8279	0.1155	0.000
	log(영업손익)	0.5571	0.0991	0.000
	log(당기순손익)	-0.1371	0.0607	0.024
	log(근로자수)	0.7272	0.0704	0.000
세액공제율 상승 이후	log(자산)	0.1107	0.0428	0.010
	log(매출액)	0.5573	0.0591	0.000
	log(영업손익)	-0.1123	0.0487	0.021
	log(당기순손익)	0.1548	0.0504	0.002
	log(근로자수)	0.8821	0.0378	0.000

주: 1. 전체 기간 관측치 = 4,652,738
 2. 세액공제율 상승 이전 관측치 = 998,488
 3. 세액공제율 상승 이후 관측치 = 3,654,25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의 결합 데이터

바. 세액공제율 변화가 기금출연에 미치는 효과성 평가 종합 해석

- 효과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세액공제율 인상 조치가 기업들의 기금출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출연 여부, 출연금 규모, 공제 여부, 그리고 공제액 등 모든 종속변수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음. 즉 세액공제율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이 기금출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출연 규모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더 나아가 세액공제율 인상 조치 이후에는 대기업의 자산 규모, 근로자 수 등 기업의 특성 요인들이 기금출연 및 공제 여부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넘어 기업의 규모와 역량이 클수록 이러한 정책적 유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회적 기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의해 더욱 증폭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해당 조항은 기업의 내부 유보 소득을 투자, 상생협력, 임금 증대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임.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내부 유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사용할 경우, 기금출연액의 300%를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해 주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20%)를 면제하는 효과를 부여함

-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투자·상생협력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 수는 약 1,200개에 달하며, 미환류소득 차감액은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는 「조특법」 제100조의32가 기업의 투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장려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 특히 중복되는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최대 공제율은 104.5%에 이를 수 있어 기업의 기금출연 인센티브를 극대화하고 있음
- 따라서 효과성 분석 결과는 세액공제율 인상과 같은 세금 정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경제 전반의 투자와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2. 기금출연이 협력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분석 개요

- 개요 및 요약
 - 연구목적: 출연기금이 협력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R&D 투자와 같은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음
 - 분석 자료
 - 자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에서 제공한 협력중소기업 협력내용 자료와 KoDATA 결합
 - 분석 대상: 협력중소기업과 그 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정의를 다양하게 고려함

- 고정효과 모형에서 기업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지만 여전히 선택편의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분석으로 강건성을 검토함
- 분석 기간: 2014~2023년
- 분석 방법론: 패널 고정효과 모형
- 주요 결과
 - 기준모형 분석 결과: 협력중소기업은 다른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매출액, R&D 투자가 높은 경향을 보임
 - 영업이익은 협력중소기업과 다른 중소기업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보임
 - 추가 분석: 2016년과 2018년 제도 변화 효과
 - 2016년: 법인세 공제세율이 7%에서 10%로 증가
 - 2018년: 「조특법」 제100조의32(미환류소득 300%의 20% 공제) 적용
 - 매출액: 일부 모형에서 2016년·2018년 후에 협력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비하여 성과가 좋은 정도가 더 크다는 추정 결과가 나옴. 하지만 강건하지 않았음
 - 연구개발비(R&D)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추정 결과
 - 영업이익은 모든 모형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임

나. 분석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 분석기간: KoDATA와 동일하게 2014~2023년 기간 활용
 - 지원날짜(연월), 협력기금 지원금액, 지원목적코드
 -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연결
 - 표본 선택 기준: 지원금을 환수한 경력이 있는 사업체는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¹²⁾
 - 지원목적코드와 지원목적별 출연금 사용내역은 <표 IV-25>와 같음.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개발비 내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2) 환수된 사업체를 내역을 반영하여 포함시키더라도 주요 결과는 유사하였음.

〈표 IV-25〉 지원목적 코드

구분	기금 사용 목적	코드
보증 또는 대출	보증 등을 통한 간접지원(출연금 미지출)	11
	출연금 지출을 통한 직접지원(대위변제 포함)	12
연구개발 지원	협력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지원	21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용·시험용 시설 투자 지원	22
	대기업이 보유한 연구용·시험용 시설 활용 지원	23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24
	협력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보호 지원	25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26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을 협력중소기업에 파견 시 협력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소요비용 지원	27
인력개발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지원	31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훈련시설 활용 지원	32
	협력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시 소요비용 지원	33
	협력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시설 투자 지원	34
생산성 향상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제21조에 따른 시설·설비·시스템을 말한다) 투자 지원	41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42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자문 지원 및 자문으로 도출된 과제의 실행 지원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	44
	대기업이 보유한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의 제공 지원	45
	협력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46
	협력중소기업의 안전설비(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투자 지원	47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51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	5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기술 도입 지원	61
	협력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 중단으로 인한 단기 자금 압박 방지를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6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 시스템 구축 지원	63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표 IV-26> 지원목적별 출연금 사용내역

지원목적 코드	기금사용 목적	평균	합	표준편차	표본수
12	출연금 지출을 통한 직접지원 (대위변제 포함)	1,486,074	7.59E+10	16,800,000	51,095
21	협력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지원	103,000,000	1.26E+11	131,000,000	1,218
2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용·시험용 시설 투자 지원	6,041,069	1.06E+10	27,400,000	1,754
24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1,646,832	1.23E+09	11,900,000	745
25	협력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보호 지원	3,039,915	2.43E+07	1,729,706	8
31	협력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지원	1,050,229	3.85E+10	8,845,092	36,614
41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제21조에 따른 시설·설비·시스템) 투자 지원	8,137,716	1.81E+11	24,500,000	22,291
43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자문 지원 및 자문으로 도출된 과제외의 실행 지원	3,514,616	9.56E+11	40,900,000	272,056
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	20,400,000	1.10E+11	67,600,000	5,409
45	대기업이 보유한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의 제공 지원	17,500,000	1.40E+08	1,232,216	8
46	협력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2,244,092	1.01E+11	36,400,000	45,158
47	협력중소기업의 안전설비(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대한 투자 지원	847,062	3.40E+09	2,985,352	4,014
51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3,798,063	1.96E+10	9,731,666	5,168
61	협력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기술 도입 지원	5,728,161	8.85E+09	14,700,000	1,545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 재무정보가 공표되는 외감기업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업체 재무정보를 제공함.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와 결합하여 협력중소기업과 대조군 자료를 구축함
- 표본선택 기준
 -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 및 관리비(판관비): 양수로 보고된 사업체를 분석대상으로 함. 0이거나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유형자산 및 연구개발비(R&D): 음수(-)로 보고된 경우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 KoDATA에서는 기업규모코드를 총 8가지 -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한시성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보호대상 중견기업, 판단제외 대상 - 로 분류하여 제공함. 기준모형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하여 분류하였으며, 강건성 검정에서는 300인 이상 근로자 수 기준이나 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경우를 고려하였음
- 활용 변수
 - 매출액, 당기순이익, 사업체 연혁, 매출원가, 판관비, 지역, 업종코드 등
 - 참조: KoDATA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등 고용 관련 정보 역시 제공함.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로자 수 정보는 서술하였듯이 중소기업 판단 기준 시 보조적으로만 활용하였음

□ 주요 기초통계

-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와 KoDATA가 매칭된 자료 기초통계는 <표 IV-27>과 같음
- 중소기업을 총 근로자수 혹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으로 하였을 때 기초통계는 <표 IV-28> 및 <표 IV-29>와 같음
- 연도별 기초통계는 <부록 2> 참조

<표 IV-27> 기초통계량

(단위: 원)

구분	협력 여부 ¹⁾ (비율)	출연금 ²⁾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³⁾	영업이익
평균	0.017	17,779,040.026	6,026,697.934	3,887,667.601	975,906.502	284,889.401
중위수	0.000	1,041,839.000	843,000.000	426,487.000	190,905.000	47,169.000
표준편차	0.129	112,204,436.506	194,418,429.087	114,138,472.057	12,249,611.650	41,616,823.037
왜도	7.464	33.247	292.818	453.333	130.532	-607.116
첨도	56.715	1,613.121	119,676.168	281,384.171	28,818.701	529,658.266
표본수	5,858,115	99,802	5,858,115	5,858,115	5,858,115	5,858,115
구분	연구개발비	총 근로자 수(명)	상시근로자 수(명)	사업체 연혁(년)	총자산	유형자산
평균	43,552.967	28.223	12.506	9.821	13,378,782.633	2,397,282.697
중위수	0.000	7.000	3.000	7.000	732,400.000	92,000.000
표준편차	1,119,553.861	232.602	120.583	8.847	1,265,747,951.006	128,168,898.813
왜도	184.285	57.814	87.298	1.590	275.873	401.297
첨도	55,132.303	4,905.545	11,259.573	7.793	89,122.874	194,261.037
표본수	5,858,115	1,272,238	5,858,115	5,777,202	5,858,115	5,325,708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중소기업은 KoDATA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으로 분류하였음

2) 출연금은 출연받은 경우에만 한정해서 기초통계를 구함

3)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자료: KoDATA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표 IV-28> 기초통계량: 중소기업을 총 근로자 수 300인 미만으로 정의한 경우

(단위: 원)

구분	협력 여부 ¹⁾ (비율)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²⁾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평균	0.040	8,034,379.000	6,114,722.000	1,335,773.000	436,566.700	83,467.070
중위수	0.000	1,805,256.000	1,082,232.000	359,978.000	79,462.000	0.000
표준편차	0.197	51,700,000.000	42,400,000.000	6,364,897.000	10,400,000.000	755,962.800
왜도	4.663	127.121	139.316	74.517	190.892	161.430
첨도	22.742	30,938.220	38,710.890	14,005.840	65,104.990	61,092.100
표본수	1,261,441	1,261,441	1,261,441	1,261,441	1,261,441	1,261,441
구분	총 근로자 수(명)	상시근로자 수(명)	사업체 연혁(년)	총자산	유형자산	
평균	17.008	17.522	11.285	10,500,000.000	2,811,052.000	
중위수	7.000	6.000	9.000	1,543,819.000	255,386.500	

<표 IV-28>의 계속

(단위: 원)

구분	총 근로자 수(명)	상시근로자 수(명)	사업체 연혁(년)	총자산	유형자산
표준편차	32.529	62.912	9.584	183,000,000.000	20,800,000.000
왜도	4.460	421.501	1.425	127.851	80.146
첨도	27.292	329,586.100	6.313	21,231.000	11,123.560
표본수	1,261,441	1,261,441	1,259,568	1,261,441	1,199,016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자료: KoDATA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표 IV-29> 기초통계량: 중소기업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으로 정의한 경우

(단위: 원)

구분	협력 여부 ¹⁾ (비율)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²⁾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평균	0.017	3,951,655.577	2,906,630.265	744,991.186	220,925.293	30,407.023
중위수	0.000	838,419.000	424,694.000	190,055.000	46,995.000	0.000
표준편차	0.129	32,389,731.155	26,866,933.176	4,310,356.510	5,075,264.957	435,730.222
왜도	7.503	200.506	237.593	81.371	306.094	216.996
첨도	57.293	80,206.964	114,541.478	13,148.190	216,713.757	126,104.021
표본수	5,842,916	5,842,916	5,842,916	5,842,916	5,842,916	5,842,916
구분	총 근로자 수(명)	상시근로자 수(명)	사업체 연혁(년)	총자산	유형자산	
평균	17.780	8.782	9.769	5,076,581.627	1,583,369.914	
중위수	7.000	3.000	7.000	728,393.500	91,083.000	
표준편차	52.479	21.791	8.763	97,550,358.252	15,284,035.215	
왜도	52.253	6.640	1.553	187.873	106.404	
첨도	5,971.694	60.276	7.529	48,636.022	20,343.126	
표본수	1,261,086	5,842,916	5,762,003	5,842,916	5,310,869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자료: KoDATA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다. 분석 모형

□ 주요 분석 회귀모형

- 추정하고자 하는 기준모형은 다음과 같음

$$y_{j,t} = \beta F_{j,t} + \gamma X_{j,t} + \alpha_j + \delta_t + \epsilon_{j,t}$$

- 위 식은 다음과 같은 변수로 구성됨

- $y_{j,t}$: 사업체 j 의 t 기 성과 변수. 자연로그 매출액,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영업이익 등
- $F_{j,t}$: 협력 중소기업 식별 관련 변수. 사업체 j 가 t 기에 출연기금을 받았으면 1, 안 받았으면 0의 값을 가짐. $\hat{\beta}$ 이 관심 추정계수에 해당함
- $X_{j,t}$: 관측되는 사업체 특성. 사업체 업력 및 업력의 제곱, 자연로그 매출원가, 자연로그 판관비, 자연로그 유형자산 등 고려
- α_j : 개별 사업체 고정효과. 이는 개별 사업체 고유의 생산성 등 데이터에서 관측할 수 없는 특성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함. 대체적으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이 임의효과(Random Effect) 모형보다 더 엄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KoDATA 등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통제변수가 가용하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삼음. 단 협력중소기업 여부의 시점별 변이가 적을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임의효과(Random effect) 모형 역시 같이 추정하며 해당 경우 개별 사업체 고정효과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 δ_t : 시간 고정효과
- $\epsilon_{j,t}$: 사업체 j 의 t 기 오차항

□ 2016년 및 2018년 효과 분석

- 배경

- 2016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7%에서 10%로 상향됨
- 2018년: 「조특법」 제100조의32 적용
- 기금출연이 해당 제도 변화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고, 기금출연 변화로 인해 성과 역시 변하는지를 검정하고자 함

○ 추정 회귀식

$$y_{j,t} = \beta_0 F_{j,t} \times D_t + \beta_1 F_{j,t} + \beta_2 D_t + \gamma X_{j,t} + \alpha_j + f(t) + \epsilon_{j,t}$$

- D_t : 2016년/2018년 이후 1 이전은 0인 더미변수
- $f(t)$: 시간 고정효과 혹은 시간 추세 통제

□ 강건성 분석

- 대조군: KoDATA에서 분류된 중소기업 기준에서 총근로자 혹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경우로 검정
-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 목적: 기금출연을 받은 중소기업이 원래 생산성 등이 높아서 성과가 좋은 것 일 수 있음
 - 고정효과 모형에서 개별 사업체 특성을 통제함으로써 이와 같은 선택편의는 부분적으로 교정될 수 있음. 강건성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음

라. 분석 결과

□ 기존모형 분석 결과

- <표 IV-30>은 자연로그 매출액을, <표 IV-31>은 자연로그 연구개발비를, <표 IV-32>은 영업이익을 협력중소기업 성과지표로 삼았을 때 추정 결과를 나타냄
 - 매출액: <표 IV-30> 추정 결과는 협력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비하여 매출액이 약 2.1~14.6% 높음을 의미함. 매출원가를 통제한 경우(모형 2와 모형4)에는 약 2.1~2.3%,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 6.4~14.6%로 차이가 존재함
 - 연구개발비: <표 IV-31> 추정 결과는 협력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약 27.9~30.1% 높음을 보임
 - 연구개발비는 다른 분석에서도 협력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이 일관되게 관찰됨. 이는 출연금 사용내역 <표 IV-1>에서 연구개발지원 내역이 많이 관측되는 것과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영업이익 성과: <표 IV-32> 추정 결과는 협력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영업이익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임. 영업이익에는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는 원임

- 영업이익은 적자인 사업체도 다수 있을 수 있고, 영업이익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비용보다 더 크게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협력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다른 분석에서도 다른 중소기업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일관적으로 관측됨
- 매출원가와 판관비: 과도한 중복통제를 피하기 위해 별도로 통제하였음

<표 IV-30> 기준모형 추정결과 - 자연로그 매출액

종속변수: 자연로그 매출액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협력중소기업여부($\hat{\beta}$) ¹⁾	0.064***	0.021***	0.146***	0.023***
(표준오차)	(0.002)	(0.001)	(0.003)	(0.001)
기업 고정효과	○	○	○	○
시간 고정효과	○	○	○	○
자연로그 판관비 ²⁾	○	×	×	×
자연로그 유형자산	○	○	○	×
자연로그 매출원가	×	○	×	○
사업체 업력 및 업력 제곱	○	○	○	○
표본수	5,250,074	4,214,076	5,253,934	4,559,952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1. * p<0.05, ** p<0.01, *** p<0.001

2. 이외 변수는 통제여부만을 보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함

자료: KoDATA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표 IV-31> 기준모형 추정결과 -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종속변수: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협력중소기업여부($\hat{\beta}$) ¹⁾	0.279***	0.280***	0.323***	0.301***
(표준오차)	(0.015)	(0.016)	(0.015)	(0.016)
기업 고정효과	○	○	○	○
시간 고정효과	○	○	○	○
자연로그 판관비 ²⁾	○	×	×	×
자연로그 유형자산	○	○	○	×
자연로그 매출원가	×	○	×	○

<표 IV-31>의 계속

종속변수: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사업체 업력 및 업력 제곱	○	○	○	○
표본수	5,250,074	4,214,076	5,253,934	4,559,952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관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1. * p<0.05, ** p<0.01, *** p<0.001
 2. 이외 변수는 통제여부만을 보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함
 자료: KoDATA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표 IV-32> 기준모형 추정결과 - 영업이익

종속변수: 영업이익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협력중소기업 여부($\hat{\beta}$) ¹⁾	27,732.760	9,178.149	35,443.430	9,988.706
(표준오차)	(40,124)	(46,591)	(38,604)	(45,376)
기업 고정효과	○	○	○	○
시간 고정효과	○	○	○	○
자연로그 관관비 ²⁾	○	×	×	×
자연로그 유형자산	○	○	○	×
자연로그 매출원가	×	○	×	○
사업체 업력 및 업력 제곱	○	○	○	○
표본수	5,250,074	4,214,076	5,253,934	4,559,952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관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1. * p<0.05, ** p<0.01, *** p<0.001
 2. 이외 변수는 통제여부만을 보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함
 자료: KoDATA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 추가적으로 협력중소기업 여부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가 작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체 고정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임의효과 모형 역시 추정함. 단 시간 고정효과는 통제하였음
- 매출액과 연구개발비의 경우 고정효과 모형보다 대체적으로 추정 결과가 큰 모습을 보임
-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추정치 부호가 모형마다 강건하지 않은 모습을 보임

- 여전히 모형 신뢰성은 관측되지 않은 기업 특성 -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생산성 등 - 을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이 더 높을 수 있음

<표 IV-33> 임의효과 모형 추정결과 - 자연로그 매출액

종속변수: 자연로그 매출액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협력중소기업여부($\hat{\beta}$) ¹⁾	0.088***	0.027***	0.200***	0.031***
(표준오차)	(0.002)	(0.001)	(0.003)	(0.001)
기업고정효과	×	×	×	×
시간고정효과	○	○	○	○
자연로그 판관비 ²⁾	○	×	×	×
자연로그 유형자산	○	○	○	×
자연로그 매출원가	×	○	×	○
사업체 업력 및 업력 제공	○	○	○	○
표본수	5,250,074	4,214,076	5,253,934	4,559,952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1. * p<0.05, ** p<0.01, *** p<0.001

2. 이외 변수는 통제여부만을 보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함

자료: KoDATA 및 대중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표 IV-34> 임의효과 모형 추정결과 -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종속변수: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협력중소기업여부($\hat{\beta}$) ¹⁾	0.586***	0.580***	0.701***	0.635***
(표준오차)	(0.009)	(0.009)	(0.009)	(0.009)
기업고정효과	×	×	×	×
시간고정효과	○	○	○	○
자연로그 판관비 ²⁾	○	×	×	×
자연로그 유형자산	○	○	○	×
자연로그 매출원가	×	○	×	○
사업체 업력 및 업력 제공	○	○	○	○
표본수	5,250,074	4,214,076	5,253,934	4,559,952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1. * p<0.05, ** p<0.01, *** p<0.001.

2. 이외 변수는 통제여부만을 보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함.

자료: KoDATA 및 대중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표 IV-35> 임의효과 모형 추정결과 - 영업이익

종속변수: 영업이익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협력중소기업 여부($\hat{\beta}$) ¹⁾	-208517.874***	-270109.061***	137933.151*	-187942.414**
(표준오차)	(57939.148)	(66261.634)	(57657.591)	(63038.075)
기업고정효과	×	×	×	×
시간고정효과	○	○	○	○
자연로그 판관비 ²⁾	○	×	×	×
자연로그 유형자산	○	○	○	×
자연로그 매출원가	×	○	×	○
사업체 업력 및 업력 제곱	○	○	○	○
표본수	5,250,074	4,214,076	5,253,934	4,559,952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1. * p<0.05, ** p<0.01, *** p<0.001

2. 이외 변수는 통제여부만을 보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함

자료: KoDATA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 기준모형 분석 결과 요약

-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사업체 고유 생산성 등이 될 수 있는 관측되지 않은 사업체 특성을 고려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과 임의효과(Random Effect) 모형 모두에서 협력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보다 유의하게 크다는 것을 보임
- 영업이익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2016년 이후 효율성 변화 여부 검정

- 추가적으로 협력중소기업 여부가 자연로그 매출액,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영업 이익과 같은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법인세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된 2016년 이후 혹은 「조특법」 제100조의32가 중복적용된 2018년 이후에 달라졌는지를 검정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교차더미 변수를 구축하여 회귀분석을 추정함
 - 교차더미: 2016년 및 2018년 이후 더미변수와 협력중소기업 여부 더미변수의 곱
- <표 IV-36>은 매출액에 관한 결과를 나타냄. 중요 관심변수는 협력중소기업 여부×2016년/2018년 이후 변수임
 - 이를 위해 교차더미 결과는 추정모형에 따라 강건하지 않음을 보임. 모형2와 모형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추정 결과를 나타냄

- 반면에 연구개발비는 <표 IV-3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모형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이 추정됨
 - 주의: 2016년 이후와 2018년 이후를 비교하는 것은 엄밀하게 차이를 해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각 추정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이후의 경우 협력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비하여 연구개발비가 높은 정도가 2016년 이후 약 12.8~15.0% 커졌음을 의미함
- 영업이익은 <표 IV-3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모형에 대해서 추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임

<표 IV-36> 2016년/2018년 이후 협력중소기업 성과 변화 검정 - 자연로그 매출액

중속변수: 자연로그 매출액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2016년 이후				
협력중소기업 여부 ¹⁾	0.002	0.022***	0.066***	0.024***
(표준오차)	(0.005)	(0.002)	(0.006)	(0.002)
2016년 이후 시간터미	-0.025	0.132***	0.390***	0.151***
(표준오차)	(0.030)	(0.026)	(0.058)	(0.026)
협력중소기업 여부×2016년 이후	0.071***	-0.001	0.093***	-0.001
(표준오차)	(0.005)	(0.002)	(0.007)	(0.003)
2018년 이후				
협력중소기업 여부 ¹⁾	0.015***	0.022***	0.082***	0.024***
(표준오차)	(0.003)	(0.002)	(0.005)	(0.002)
2016년 이후 시간터미	-0.026	0.132***	0.390***	0.151***
(표준오차)	(0.030)	(0.026)	(0.058)	(0.026)
협력중소기업 여부×2016년 이후	0.065***	-0.002	0.085***	-0.002
(표준오차)	(0.004)	(0.002)	(0.005)	(0.002)
기업고정효과	×	×	×	×
시간고정효과	○	○	○	○
자연로그 관관비 ²⁾	○	×	×	×
자연로그 유형자산	○	○	○	×
자연로그 매출원가	×	○	×	○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관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1. * p<0.05, ** p<0.01, *** p<0.001

2. 이외 변수는 통제여부만을 보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요청시 제공 가능함

자료: KoDATA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표 IV-37> 2016년/2018년 이후 협력중소기업 성과 변화 검정 -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종속변수: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2016년 이후				
협력중소기업 여부 ¹⁾	0.167***	0.163***	0.201***	0.171***
(표준오차)	(0.039)	(0.039)	(0.039)	(0.039)
2016년 이후 시간더미	0.084	0.183	0.309*	0.266
(표준오차)	(0.127)	(0.144)	(0.130)	(0.141)
협력중소기업 여부×2016년 이후	0.128**	0.134**	0.139***	0.150***
(표준오차)	(0.041)	(0.041)	(0.041)	(0.041)
2018년 이후				
협력중소기업 여부 ¹⁾	0.187***	0.194***	0.224***	0.200***
(표준오차)	(0.028)	(0.028)	(0.028)	(0.028)
2016년 이후 시간더미	0.084	0.183	0.308*	0.265
(표준오차)	(0.127)	(0.144)	(0.130)	(0.141)
협력중소기업 여부×2016년 이후	0.120***	0.115***	0.130***	0.134***
(표준오차)	(0.032)	(0.032)	(0.032)	(0.032)
기업고정효과	×	×	×	×
시간고정효과	○	○	○	○
자연로그 판관비 ²⁾	○	×	×	×
자연로그 유형자산	○	○	○	×
자연로그 매출원가	×	○	×	○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1. * p<0.05, ** p<0.01, *** p<0.001

2. 이외 변수는 통제여부만을 보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함

자료: KoDATA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표 IV-38> 2016년/2018년 이후 협력중소기업 성과 변화 검정 - 영업이익

종속변수: 영업이익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2016년 이후				
협력중소기업 여부 ¹⁾	-69829.032	-66576.262	-62814.655	-65635.920
(표준오차)	(72031.014)	(81473.952)	(73195.801)	(81436.109)
2016년 이후 시간더미	1236047.575	1471238.073	1271854.811	1433616.751
(표준오차)	(1441316.240)	(1652943.133)	(1441954.255)	(1609110.290)
협력중소기업 여부 × 2016년 이후	111901.764	87463.776	112695.657	87098.263
(표준오차)	(117433.674)	(137303.720)	(116944.132)	(135820.730)
2018년 이후				
협력중소기업 여부 ¹⁾	-34544.199	-35655.800	-27616.865	-36220.853
(표준오차)	(53083.526)	(59686.862)	(54296.364)	(59839.869)
2016년 이후 시간더미	1236099.420	1471338.245	1271901.098	1433686.541
(표준오차)	(1441321.660)	(1652952.575)	(1441961.119)	(1609121.338)
협력중소기업 여부 × 2016년 이후	81742.942	59657.521	82764.768	61197.853
(표준오차)	(109779.166)	(129480.592)	(109329.432)	(127782.099)
기업고정효과	×	×	×	×
시간고정효과	○	○	○	○
자연로그 판관비 ²⁾	○	×	×	×
자연로그 유형자산	○	○	○	×
자연로그 매출원가	×	○	×	○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1. * p<0.05, ** p<0.01, *** p<0.001

2. 이외 변수는 통제여부만을 보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함

자료: KoDATA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 강건성 검정 1. 대조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총 근로자 수 혹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 기업으로 정의한 경우

- 기준모형 분석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음. 협력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다른 중소기업보다 유의하게 큰 것을 관측할 수 있으며, 영업이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표 IV-39> 총 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 - 자연로그 매출액

종속변수: 자연로그 매출액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협력중소기업 여부($\hat{\beta}$) ¹⁾	0.055***	0.016***	0.103***	0.018***
(표준오차)	(0.003)	(0.002)	(0.004)	(0.002)
기업 고정효과	○	○	○	○
시간 고정효과	○	○	○	○
자연로그 판관비 ²⁾	○	×	×	×
자연로그 유형자산	○	○	○	×
자연로그 매출원가	×	○	×	○
사업체 업력 및 업력 제공	○	○	○	○
표본수	1,196,509	1,061,811	1,196,994	1,104,875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1. * p<0.05, ** p<0.01, *** p<0.001

2. 이외 변수는 통제여부만을 보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함

자료: KoDATA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2014~2023년.

<표 IV-40> 총 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 -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종속변수: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협력중소기업 여부($\hat{\beta}$) ¹⁾	0.164***	0.178***	0.212***	0.194***
(표준오차)	(0.023)	(0.024)	(0.023)	(0.024)
기업 고정효과	○	○	○	○
시간 고정효과	○	○	○	○
자연로그 판관비 ²⁾	○	×	×	×
자연로그 유형자산	○	○	○	×
자연로그 매출원가	×	○	×	○
사업체 업력 및 업력 제공	○	○	○	○
표본수	1,196,509	1,061,811	1,196,994	1,104,875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1. * p<0.05, ** p<0.01, *** p<0.001

2. 이외 변수는 통제여부만을 보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함

자료: KoDATA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표 IV-41> 총 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 - 영업이익

종속변수: 영업이익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협력중소기업여부($\hat{\beta}$) ¹⁾	-9968.414	-26137.302	188.135	-22312.631
(표준오차)	(20926.793)	(19885.872)	(20453.409)	(19708.262)
기업 고정효과	○	○	○	○
시간 고정효과	○	○	○	○
자연로그 판관비 ²⁾	○	×	×	×
자연로그 유형자산	○	○	○	×
자연로그 매출원가	×	○	×	○
사업체 업력 및 업력 제공	○	○	○	○
표본수	1,196,509	1,061,811	1,196,994	1,104,875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1. * p<0.05, ** p<0.01, *** p<0.001

2. 이외 변수는 통제여부만을 보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함

자료: KoDATA 및 대중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2014~2023년,

<표 IV-42> 상시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 - 자연로그 매출액

종속변수: 자연로그 매출액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협력중소기업 여부($\hat{\beta}$) ¹⁾	0.065***	0.021***	0.147***	0.023***
(표준오차)	(0.002)	(0.001)	(0.003)	(0.001)
기업 고정효과	○	○	○	○
시간 고정효과	○	○	○	○
자연로그 판관비 ²⁾	○	×	×	×
자연로그 유형자산	○	○	○	×
자연로그 매출원가	×	○	×	○
사업체 업력 및 업력 제공	○	○	○	○
표본수	1,196,509	1,061,811	1,196,994	1,104,875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1. * p<0.05, ** p<0.01, *** p<0.001

2. 이외 변수는 통제여부만을 보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함.

자료: KoDATA 및 대중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표 IV-43〉 상시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 -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종속변수: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협력중소기업 여부($\hat{\beta}$) ¹⁾	0.283***	0.282***	0.327***	0.303***
(표준오차)	(0.015)	(0.016)	(0.016)	(0.016)
기업 고정효과	○	○	○	○
시간 고정효과	○	○	○	○
자연로그 판관비 ²⁾	○	×	×	×
자연로그 유형자산	○	○	○	×
자연로그 매출원가	×	○	×	○
사업체 업력 및 업력 제공	○	○	○	○
표본수	1,196,509	1,061,811	1,196,994	1,104,875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1. * p<0.05, ** p<0.01, *** p<0.001

2. 이외 변수는 통제여부만을 보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요청시 제공 가능함

자료: KoDATA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표 IV-44〉 상시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 - 영업이익

종속변수: 자연로그 영업이익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협력중소기업 여부($\hat{\beta}$) ¹⁾	7430.967	-15355.498	13571.163	-14315.604
(표준오차)	(10492.357)	(10838.791)	(10409.839)	(10580.906)
기업 고정효과	○	○	○	○
시간 고정효과	○	○	○	○
자연로그 판관비 ²⁾	○	×	×	×
자연로그 유형자산	○	○	○	×
자연로그 매출원가	×	○	×	○
사업체 업력 및 업력 제공	○	○	○	○
표본수	1,196,509	1,061,811	1,196,994	1,104,875

주: 1) 협력 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2)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1. * p<0.05, ** p<0.01, *** p<0.001

2. 이외 변수는 통제여부만을 보고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함

자료: KoDATA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자료, 2014~2023년.

- 강건성 검정 2.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통한 연도별 협력중소기업과 다른 중소기업 간 평균적 성과 차이 비교
 - 우려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 만약 생산성이 좋은 중소기업이 협력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협력기금을 받게될 경우, 협력 여부가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 추계될 수 있음
 - 기준모형에서 각 사업체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하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선택편의는 부분적으로 교정이 되었을 수 있음
 -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기준모형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함
 - 이와 같은 경우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성향 점수 매칭(PSM)을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처치집단(treated group)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성과의 평균적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임
 - 관련된 기술적 어려움
 - 해당 자료는 패널데이터이고, 협력중소기업 수혜 시점이 제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통적인 PSM 분석이 어려움
 - 협력중소기업의 수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로 PSM을 통하여 협력중소기업과 다른 중소기업 간 성과의 평균적 차이를 살펴보았음
 - 당연히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며 연도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기준모형과 비교하여 평균적 효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존재함. 강건성 검토 차원에서 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추정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함
 - PSM 수행방법
 - 협력중소기업의 전년도 설명변수 - 매출원가, 유형자산, 사업체 연혁 등 - 와 유사한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당기 해당 중소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자연로그 매출액, 영업이익 등 성과를 비교하였음
 - 주요 결과
 - <부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추정치는 PSM을 통해 매칭한 협력중소기업과 다른 중소기업 간 성과의 평균적 차이를 나타냄
 - 예를 들어 2015년의 경우, 협력중소기업과 (매칭한) 다른 중소기업 간에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약 15.1%, 연구개발비는 약 219.9%, 영업이익은 약 -112,522.7원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함

-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기준모형보다 정량적으로 더 큰 차이를 의미하며, 영업이익은 2019년을 제외하면 협력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보다 작음을 시사함
- 방향성만 참고해서 해석하면 PSM 수행 후 협력중소기업과 비수혜 중소기업을 비교하더라도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협력중소기업이 유의하게 큰 것을 보이며 영업이익은 대체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모습을 보임. 본 연구에서 수행할 수 있었던 PSM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준모형 분석 결과의 방향성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검정되었음을 의미함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 본 연구는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3)」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였음

- (결과요약) 타당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3)」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효과성 분석) 법인세 세액공제는 상생협력 기금출연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을 보이며, 출연기금을 협조받은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른 중소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을 보임
 - (타당성 분석) 상생협력 기금 조성은 시장에서 형성되기 어렵고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적절할 수 있음. 수혜자 특정·지원시기·행정집행 측면에서 재정사업보다 조세지출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그러나 「일반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인정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가 중복지원, 그리고 법인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효과까지 모두 고려하면 세액감소 효과가 104.5%로서, 출연금액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함

- (종합평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3)」는 효과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제도가 목적인 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복되는 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하고, 출연금액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재정사업 역시 운용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제도를 지속해서 운용하는 경우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존재함

2. 개선방안

- 조세지원 과다로 인한 문제점
 - 재정건전성 훼손 가능성
 - 기금출연의 진정성 훼손 및 왜곡 우려
 - 중소기업·대기업 간 지원 형평성 문제

- 정책 추진 방향: 시나리오 1, 2, 3와 같은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제언함.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
 - 1단계: 시나리오 2(투자·상생협력 과세특례 차감비율 축소) 우선 추진 → 조세 혜택 총량 적정화
 - 2단계: 시나리오 3(성과기반 세액공제 차등 적용) 병행 → 기금출연의 질적 수준 제고

- 시나리오 1: 세액공제·기부금 손금산입 중복 제한
 - 내용: 세액공제(10%)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 중 하나만 선택 적용
 - 장점
 - 과도한 조세지원 방지
 - 제도 운영 명확성 확보
 - 출연 진정성 및 형평성 개선 기대
 - 단점
 - 사회적 기여 유인 약화
 - 기업 자율적 인센티브 설계 어려움

- 시나리오 2: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차감비율 축소
 - 내용: 미환류소득 차감 비율을 300 → 200% 등으로 축소
 - 장점
 - 조세감소 효과 적정화
 - 재정건전성 강화
 - 단점

- 투자 및 상생활동 유인 약화
- 세제혜택 매력도 저하

□ 시나리오 3: 상생성과 기반 세액공제 차등 적용

- 내용: 상생 성과(매출 증가율·고용 창출 등)에 따라 세액공제율 5~15% 차등 적용
- 장점
 - 성과 중심 상생협력 촉진
 - 정책목표 실현도 제고
- 단점
 - 성과 측정·검증 부담 증가
 - 행정관리 비용 소폭 증가

□ 정책 제언

- 1단계로 시나리오 2 시행 → 조세혜택 총량 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
- 그 후 시나리오 3 병행 → 상생협력 질적 수준 및 정책 효과 제고

□ 제도 수행 관련 제언

- 현재 지원 가능 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음. 기준을 세분화하여 더 발전이 필요하고 가능한 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면 효율성 제고에 도움될 수 있을 수 있기에 검토를 고려할 수 있음

참고문헌

<국내문헌>

기획재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2010.

_____,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2019. 9.

박노욱·김학수,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지침안 마련』,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백훈, 『범부처 상생협력정책 분석 및 과제 마련』, 수시연구 24-06,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 지원 공고』, 사업공고 제2025-047호, 2025.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사업공고 제2025-11호, 2025.

한국개발연구원, 『조세특례 타당성 평가를 위한 연구』, 2016.

황희주·정규언·윤재형·김태형, 『2019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I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한국개발연구원, 201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각 연도.

_____,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각 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외국문헌>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CITR): Material concerning the accredit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2019.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winwifund.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https://win-win.or.kr/>

부 록



부록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령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3. 29., 2016. 12. 20., 2019. 12. 31.>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 12. 20., 2019. 12. 31.>

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④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⑤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16. 12. 20., 2018. 12. 24.>

⑥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18. 12. 24.>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제104조의31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100분의 20
 -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록 2. 효과성 분석 부표 및 부도

<부표 1> 연도별 기초통계

(단위: 원)

2014년						
구분	협력여부 (비율)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평균	0.006	7,354,417.795	5,034,928.699	1,055,939.358	347,748.316	52,405.860
중위수	0.000	1,160,149.000	723,000.000	195,364.000	55,741.500	0.000
표준편차	0.074	184,763,954.371	126,586,380.257	13,034,026.114	12,046,311.187	898,334.966
왜도	13.328	212.625	300.711	125.608	175.218	98.133
첨도	178.633	59,321.312	113,811.119	26,103.926	47,113.334	14,171.070
개수	362,158	362,158	362,158	362,158	362,158	362,158
구분	총 근로자 수(명)	상시 근로자 수(명)	사업체 연혁(년)	총자산	유형자산	
평균	40.903	17.504	9.046	15,362,472.346	2,766,560.699	
중위수	9.000	4.000	7.000	804,459.500	85,908.500	
표준편차	297.750	151.078	8.328	1,082,278,558.208	139,409,632.553	
왜도	46.711	69.953	1.911	185.991	309.208	
첨도	3,063.223	7,155.137	11.818	38,989.637	113,281.113	
개수	57,328	362,158	356,266	362,158	339,724	
2015년						
구분	협력여부 (비율)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평균	0.013	6,971,773.182	4,618,780.745	1,027,568.819	417,763.435	48,115.912
중위수	0.000	1,085,681.000	654,660.500	194,670.500	56,494.500	0.000
표준편차	0.115	183,780,756.789	111,940,115.871	12,906,554.387	37,744,896.358	894,290.222
왜도	8.500	218.915	318.971	137.819	507.937	114.280
첨도	73.252	63,861.156	133,618.481	31,670.273	291,110.782	19,184.380
개수	400,118	400,118	400,118	400,118	400,118	400,118
구분	총 근로자 수(명)	상시 근로자 수(명)	사업체 연혁(년)	총자산	유형자산	
평균	38.847	16.290	9.119	14,947,384.591	2,628,616.455	
중위수	9.000	4.000	7.000	793,331.500	87,354.500	
표준편차	286.053	142.455	8.362	1,143,150,948.003	136,553,097.598	
왜도	48.692	74.100	1.765	200.637	327.607	
첨도	3,247.544	8,099.322	10.089	44,735.314	127,430.513	
개수	65,658	400,118	393,031	400,118	372,806	

<부표 1>의 계속

(단위: 원)

2016년						
구분	협력여부 (비율)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평균	0.012	6,638,095.035	4,328,273.261	1,017,073.994	319,970.005	46,761.224
중위수	0.000	1,037,864.000	600,272.000	197,589.000	57,824.500	0.000
표준편차	0.110	180,086,958.835	104,192,019.980	13,034,176.058	41,367,491.478	933,417.461
왜도	8.855	238.090	356.422	137.466	-538.059	111.796
침도	79.417	75,409.622	167,518.007	30,795.873	339,841.604	17,538.022
개수	440,238	440,238	440,238	440,238	440,238	440,238
구분	총 근로자 수(명)	상시 근로자 수(명)	사업체 연혁(년)	총자산	유형자산	
평균	34.422	15.447	9.259	14,493,552.188	2,578,622.347	
중위수	9.000	4.000	7.000	795,086.000	90,438.000	
표준편차	258.795	137.813	8.481	1,136,357,756.647	135,555,608.556	
왜도	52.613	77.429	1.730	211.819	339.092	
침도	3,901.440	8,793.806	9.645	50,043.429	138,084.657	
개수	81,209	440,238	431,585	440,238	407,762	
2017년						
구분	협력여부 (비율)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평균	0.010	6,328,843.025	4,137,984.753	979,481.931	312,992.914	43,823.888
중위수	0.000	949,414.500	523,154.000	193,307.500	55,285.500	0.000
표준편차	0.102	177,006,887.760	102,985,147.389	12,520,308.502	39,803,729.171	1,038,232.723
왜도	9.620	247.114	381.111	135.192	-620.559	135.171
침도	93.553	81,393.354	191,591.918	31,048.742	423,908.891	24,522.664
개수	502,074	502,074	502,074	502,074	502,074	502,074
구분	총 근로자 수(명)	상시 근로자 수(명)	사업체 연혁(년)	총자산	유형자산	
평균	35.710	14.022	9.352	13,344,584.755	2,426,177.162	
중위수	8.000	4.000	7.000	733,025.500	87,237.500	
표준편차	278.830	129.392	8.554	1,105,291,659.495	132,413,764.170	
왜도	47.046	82.109	1.666	229.193	359.757	
침도	3,138.479	9,926.364	8.787	58,650.176	154,538.180	
개수	86,419	502,074	490,103	502,074	461,116	

<부표 1>의 계속

(단위: 원)

2018년						
구분	협력여부 (비율)	매출액	매출원가	관관비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평균	0.010	5,588,285.708	3,683,718.250	922,843.103	244,650.144	38,370.828
중위수	0.000	847,750.000	436,683.000	190,080.000	48,422.000	0.000
표준편차	0.099	161,210,948.807	99,362,262.719	11,868,661.139	42,060,569.934	899,290.524
왜도	9.858	293.616	431.250	145.037	-673.300	142.639
첨도	98.179	116,544.899	243,207.789	35,974.713	498,627.195	28,712.816
개수	598,911	598,911	598,911	598,911	598,911	598,911
구분	총 근로자 수(명)	상시 근로자 수(명)	사업체 연혁(년)	총자산	유형자산	
평균	33.829	12.450	9.515	11,820,006.252	2,201,850.598	
중위수	7.000	3.000	7.000	670,979.000	81,300.000	
표준편차	285.027	118.604	8.665	1,066,375,719.215	123,762,440.375	
왜도	49.485	89.400	1.617	254.699	395.451	
첨도	3,399.682	11,792.311	8.131	72,639.222	186,814.793	
개수	95,331	598,911	585,924	598,911	546,116	
2019년						
구분	협력여부 (비율)	매출액	매출원가	관관비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평균	0.014	5,123,406.527	3,312,741.107	883,148.054	260,020.066	36,832.547
중위수	0.000	754,951.000	369,260.000	181,365.000	44,200.000	0.000
표준편차	0.118	163,084,819.208	93,159,228.319	10,477,986.129	11,757,898.467	923,381.625
왜도	8.266	316.938	446.453	113.023	35.266	142.130
첨도	69.330	137,385.385	262,174.629	20,157.589	58,879.645	29,438.933
개수	683,709	683,709	683,709	683,709	683,709	683,709
구분	총 근로자 수(명)	상시 근로자 수(명)	사업체 연혁(년)	총자산	유형자산	
평균	27.024	11.377	9.637	10,986,732.724	2,107,719.904	
중위수	6.000	3.000	7.000	632,318.000	79,027.000	
표준편차	212.154	112.656	8.760	1,065,467,465.350	122,489,047.842	
왜도	61.235	93.368	1.571	281.400	422.620	
첨도	5,902.033	12,862.234	7.537	88,208.793	211,473.510	
개수	184,166	683,709	672,354	683,709	617,763	

<부표 1>의 계속

(단위: 원)

2020년						
구분	협력여부 (비율)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평균	0.019	4,871,794.158	3,043,052.682	847,260.249	226,927.298	37,440.397
중위수	0.000	682,428.500	321,755.000	171,329.000	38,027.000	0.000
표준편차	0.136	170,833,978.518	83,520,323.401	10,857,563.588	36,796,656.420	1,279,139.886
왜도	7.085	317.369	424.934	137.038	-587.780	219.430
침도	51.193	140,147.401	240,872.078	30,374.692	491,787.184	64,528.009
개수	754,594	754,594	754,594	754,594	754,594	754,594
구분	총 근로자 수(명)	상시 근로자 수(명)	사업체 연혁(년)	총자산	유형자산	
평균	26.392	10.648	9.789	11,670,505.391	2,087,862.778	
중위수	6.000	3.000	7.000	628,758.500	83,001.000	
표준편차	242.009	107.808	8.849	1,273,527,798.765	120,869,520.862	
왜도	59.629	96.696	1.527	297.492	441.323	
침도	5,127.162	13,900.935	7.069	99,098.994	230,877.039	
개수	143,082	754,594	746,552	754,594	677,728	
2021년						
구분	협력여부 (비율)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평균	0.018	5,160,722.240	3,288,495.918	890,862.970	276,962.430	38,069.002
중위수	0.000	687,491.000	313,267.500	175,275.500	39,686.000	0.000
표준편차	0.134	176,474,903.473	98,013,341.669	11,740,366.117	44,354,693.771	1,215,148.472
왜도	7.188	342.660	444.663	131.942	-588.348	218.986
침도	52.669	166,155.857	262,553.416	27,205.497	485,376.103	67,571.439
개수	801,072	801,072	801,072	801,072	801,072	801,072
구분	총 근로자 수(명)	상시 근로자 수(명)	사업체 연혁(년)	총자산	유형자산	
평균	24.052	10.112	9.984	12,319,564.319	2,163,404.735	
중위수	5.000	3.000	7.000	662,602.000	90,312.500	
표준편차	215.152	104.851	8.981	1,364,517,537.918	121,623,702.991	
왜도	64.305	99.178	1.517	303.865	454.197	
침도	6,431.518	14,643.855	6.997	103,967.563	244,803.631	
개수	142,042	801,072	794,277	801,072	717,192	

<부표 1>의 계속

(단위: 원)

2022년						
구분	협력여부 (비율)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평균	0.023	6,321,091.022	4,011,465.994	1,018,307.872	252,533.145	45,083.037
중위수	0.000	767,568.000	343,186.000	196,754.000	44,681.000	0.000
표준편차	0.150	239,505,220.125	153,502,919.813	12,736,149.141	60,131,072.561	1,270,356.293
왜도	6.346	271.388	471.409	124.049	-549.813	183.166
첨도	41.272	96,533.942	275,647.942	26,252.873	327,109.945	51,406.076
개수	741,017	741,017	741,017	741,017	741,017	741,017
구분	총 근로자 수(명)	상시 근로자 수(명)	사업체 연혁(년)	총자산	유형자산	
평균	26.541	10.649	10.438	14,086,050.267	2,454,897.633	
중위수	6.000	3.000	8.000	771,209.000	109,379.000	
표준편차	237.918	108.773	9.170	1,499,161,066.395	131,062,259.994	
왜도	59.432	95.940	1.480	286.223	431.985	
첨도	5,381.692	13,664.156	6.657	90,622.517	220,454.950	
개수	127,479	741,017	735,730	741,017	664,855	
2023년						
구분	협력여부 (비율)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평균	0.035	7,676,498.372	4,781,297.647	1,253,511.411	301,753.166	59,208.742
중위수	0.000	942,887.500	417,017.000	242,241.000	51,041.000	0.000
표준편차	0.185	271,448,130.570	151,196,862.723	14,351,986.704	51,846,241.182	1,399,445.941
왜도	5.037	272.849	441.639	112.841	-614.841	166.630
첨도	26.370	97,597.502	239,608.970	23,155.712	435,924.244	47,905.945
개수	574,224	574,224	574,224	574,224	574,224	574,224
구분	총 근로자 수(명)	상시 근로자 수(명)	사업체 연혁(년)	총자산	유형자산	
평균	21.940	12.721	11.164	17,493,681.858	3,023,004.993	
중위수	7.000	3.000	9.000	1,032,686.000	153,054.500	
표준편차	165.944	122.012	9.454	1,571,679,950.810	129,937,633.585	
왜도	65.519	86.098	1.465	253.574	459.314	
첨도	6,282.553	10,992.497	6.579	71,596.570	261,482.509	
개수	289,524	574,224	571,380	574,224	520,646	

주: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의미함
 자료: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부표 2> PSM 분석 - 각 연도별 협력중소기업 성과

PSM: 각 연도별 협력중소기업과 비수혜 중소기업 간 성과차이			
	2015년	2016년	2017년
자연로그 매출액	0.151***	0.165***	0.159***
(표준오차)	(0.022)	(0.024)	(0.024)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2.199***	2.502***	2.790***
(표준오차)	(0.102)	(0.101)	(0.102)
영업이익	-112522.654*	-168218.180*	-171339.027*
(표준오차)	(53999.300)	(67279.301)	(69436.558)
	2018년	2019년	2020년
자연로그 매출액	0.150***	0.162***	0.133***
(표준오차)	(0.021)	(0.019)	(0.016)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1.937***	1.727***	1.584***
(표준오차)	(0.096)	(0.075)	(0.061)
영업이익	-180354.378**	-83812.814	-96866.060**
(표준오차)	(64688.453)	(52490.050)	(34090.808)
	2021년	2022년	2023년
자연로그 매출액	0.110***	0.157***	0.200***
(표준오차)	(0.016)	(0.015)	(0.014)
자연로그 연구개발비	1.609***	1.672***	1.655***
(표준오차)	(0.060)	(0.056)	(0.053)
영업이익	-184533.262***	-298933.028**	-128485.592***
(표준오차)	(34115.998)	(91746.304)	(34949.034)

주: 협력여부는 출연기금을 받은 협력중소기업이면 1, 아닌 중소기업은 0임. PSM 분석 시 협력중소기업의 이전기 자연로그 매출원가, 자연로그 유형자산, 사업체 연혁 및 사업체 연혁의 제곱을 기준으로 매칭하여 수행하였음

* p<0.05, ** p<0.01, *** p<0.001

자료: KoDATA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출연금 사용내역, 2014~2023년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ef.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www.kipf.re.kr